



제2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 제1장 정정보도 게재 사례
- 제2장 반론보도 게재 사례
- 제3장 추후보도 게재 사례
- 제4장 손해배상 지급 사례
- 제5장 열람차단 / 기사수정 사례
- 제6장 기타 사례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제 1 장

정정보도 게재 사례

제1장 정정보도 게재 사례

사례 1 2021경남조정6·7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일반단체(노동조합)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보도, 기고문 게재)

언론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외부 기고문에 대한 언론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외부 필자의 병원 노동조합 비판 기고문에 대해 정정보도 및 반대 기고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법적 소송 및 고발 등 ○○병원 노동조합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병원 사무국장 A 씨 사망의 한 원인이며, 병원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 데에는 역대 재단 이사장 및 재단 관계자들의 친노조 행보가 크게 작용했다는 등의 취지를 담은 외부 기고문을 게재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노동조합은 ○○병원과의 법적 소송 당시 A 사무국장은 해임 상태여서 소송에 관여한 바가 없고, 노동조합이 A 사무국장 개인을 고발한 적도 없으므로, 노동조합과의 법적 갈등이 A 사무국장의 사망 원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이며, 노동조합으로 인해 병원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였다는 내용도 사실 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노동조합의 이미지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해당 기고문이 외부 필자 의견을 그대로 게재한 것에 불과해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고문의 내용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해 있다면, 신청인 노동조합과 기고자 간 합의를 통해 반론보도문 게재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외부 기고문이라는 이유로 언론사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설명하고, 사실과 다른 핵심적인 부분은 정정보도를, 그 외 쟁점은 신청인 노동조합의 기고문을 후속보도 형식으로 게재하여 반론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지금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고 안타까움과 함께 여러 뒷말들이 오가고 있다. 정년을 불과 6개월 앞둔 터에다 지난 5년여 넘게 ○○병원 노조와의 법적 소송 등 온갖 갈등과 대립 속에 오히려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노조의 편을 드는 듯한 행보가 본인에게는 큰 스트레스였던 점은 주변에 잘 알려져 왔고 예견되어 왔던 일이다. **[중략]** 현재 병원의 구성원들은 의료진이 2백여 명, 간부를 포함한 비노조 직원 3백여 명, 그리고 노조원 1천 5백여 명 모두 2천여 명에 이르는 매머드급 규모이다. 언제부터인지 환자보다 직원이 더 많은 병원이라는 자조 섞인 한탄들이다. **[중략]**

이렇게 노조에 약점이 단단히 잡힌 꼴이니 재단 관계자들은 언제나 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노조에 계속 끌려 다니는 형국이다. 지금의 재단 이사장도 연임한 노조위원장인 간부가 자기 교회에 출석하는 터에 친노조 행보라는 세간의 평가이다. 역대 병원 원장들 가운데에는 병원 개혁을 하려다 노조와 마찰로 법적 소송까지 가는 수모를 겪고 중도 하차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니면 아예 노조에 침묵 내지는 협조자가 되는 경우이다. 여기에 역대 재단 이사장마다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비상식을 자행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노조를 중심으로 한 병원 개혁은 빈번히 물 건너가는 형국은 물론이고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탈락되는 수모까지 당하게 된 셈. **[후략]**

조정성립사항

정정보도문

보도제목: [정정보도] ○○병원 노조 관련

본문내용: 본 신문은 조정대상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1. 고 A 사무국장이 노조와의 분쟁으로 쌓인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했으나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로, 노조와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2. 환자보다 직원이 더 많다고 보도했으나 ○○병원은 동 지역 내 상급병원에 비해 환자 수 대비 직원 수가 적은 편으로 확인됐습니다.
3. 역대 병원 원장들이 노조와의 법적 소송으로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으나 노조와 법적 소송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4. 편의시설 운영 이익이 노조의 활동자금원이 되었다는 보도 관련, 직원의 후생복지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 노조와의 법적 소송 실무를 추진한 장본인이 고 A 사무국장이었다고 했으나 고 A 사무국장이

진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 우측 기사목록에 통상의 기사목록 제목 크기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 48시간 게재 후에는 정정보도문을 기사 DB에 보관하여 지속적으로 열람·검색되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해당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후속보도(기고문) 게재

- 신청인은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조정대상보도를 반박하는 취지의 기고문(단, 조정대상보도의 분량 이내로 한다)을 작성하여 송부하고, 피신청인은 송부된 기고문을 확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 우측 기사목록에 해당 기고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기고문 내용 상단에 '본지는 언론의 책임인 사실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노동조합 측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라는 문장을 삽입한다.
- 48시간 게재 후에는 해당 기고문을 기사 DB에 보관하여 지속적으로 열람·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신청인 기고문의 링크를 게재한다.



사례 2 2021대전조정8·9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정정보도, 열람차단)

권익위에서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은 신청인을 악성민원인으로 표현한 보도와 관련, 조정 과정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졌으나, 이후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기사의 열람을 차단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인의 신고 내용이 공익에 해당하는지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형식적 요건에만 해당하면 무조건 공익제보자로 선정하고 있다며 권익위의 행정절차를 비판하는 보도를 게재했다. 언론사는 해당 보도에서 공익제보자로 선정된 신청인 A 씨를 두고 이웃을 명예훼손한 혐의 등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악성민원인이라고 표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국가보조금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자 공익을 목적으로 신고를 하였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패행위 공익제보자로 선정되었고, 신고 내용과 관련한 도청의 감사에서도 보조금 집행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했다. 특히, 신청인은 본인에 대한 11건의 고소 건은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처분 되었음에도 기사로 인해 주민을 괴롭히는 악성민원인으로 매도당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와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신청인은 기사의 열람차단과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언론사는 기사를 열람차단할 의사는 있으나 사과문 게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부제소 조항을 합의사항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수용하겠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언론사가 부제소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양 당사자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중재부는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였으나, 심리종결 후 조사관이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여 정정보도 및 조정대상기사의 열람차단으로 분쟁이 종결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불성립결정 후 보도문

정정보도문

보도제목: [정정보도] “악성 민원인 공익제보자 둔갑시킨 국민권익위” 관련

본문내용: 본 신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농업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신고한 A 씨와 관련해 도 감사위원회가 보조금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해당 신고인은 갖은 민원을 제기하며 이웃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악성 민원인을 공익제보자로 인정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도 감사위원회는 보조금 집행이 적정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고, 해당 신고인이 갖은 민원을 제기하며 이웃사람을 괴롭히지 않았으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보도로 인해 본의 아니게 공익제보자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보도방법

※ 조정불성립결정 후 게재된 보도문이므로 별도 보도방법 관련 합의서면 없음



사례 3 2021서울조정503/504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국가기관
피신청인 유형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정보도)

강남 소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타 지역으로 강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보도를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 기관이 강남 소재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자사고)를 뉴타운 등 부동산 개발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신청인이 발주한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학생 배치(배정)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사실상 강제 이전을 염두에 둔 사전조사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교육행정기관으로서, 2025년도부터 시행될 고교학점제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앞두고 서울 시내 11개 고등학교군 전 지역의 종합적 중장기 학생(학교) 배치 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발주한 것이지, 강남 소재 자사고의 부동산 개발 지역 이전은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이전은 학교법인의 신청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신청인 기관이 강제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여 기관의 정책 신뢰성이 저하되는 등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반론보도 게재는 가능하나 정정보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심리 중 표명하였고, 신청인 기관은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보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중재부는 제출서면을 검토한 결과, 정정보도가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 게재를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교육 당국이 서울 '강남 8학군'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뉴타운 등 부동산 개발지역으로 이전 추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 시점은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2025년 3월 이후가 유력하다. 취재 결과 신청인 기관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학생 배치(배정)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이는 사실상 강제 이전을 염두에 둔 사전 조사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대상 학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중략]**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재배치 검토 대상 학교는 강남구·서초구의 △A고(강남구) △B고(서초구) △C여고(서초구) △D고(강남구) △E고(강남구) 등 5개교다. 서울 중부 (종로구·용산구·중구)에 있는 F고(종로구), G여고(중구), H고(종로구) 자사고 3곳과 I외고(중구), J고(종로구) 등 총 10개교가 대상이다. **[후략]**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정정보도문

보도제목: [정정보도] 「강남 5개 자사고 '강제이전' 추진」 보도 등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위와 같은 제목 등의 조정대상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강남 5개 자사고 강제이전을 추진'하고 '강남8학군 내 자사고 뉴타운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현재 신청인은 2025학년도 전면 시행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학생배치(배정) 방안 마련 및 2025학년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른 기존 일반고와 균형 배치를 위해 「고교학점제 전면시행과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에 따른 학생배치(배정)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외부에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이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신문 3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①의 부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고, 본문 활자는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①의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 3번째 이내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이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④, ⑤, ⑥의 각 본문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각 게재한다.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4 2021서울조정643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보도, 열람차단)

신청인이 배우로 활동 중인 딸의 학교폭력 관련 논란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기사의 열람을 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배우로 활동 중인 B 씨의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 신청인과 학교폭력 피해자 모임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보도하면서 B 씨의 학교폭력을 가족들이 인지하고 있던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딸 B 씨의 학교폭력 논란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피신청인 언론사가 통화 내용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신청인이 이미 학교폭력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심리 과정에서 중재부는 신청인과 학교폭력 피해자 모임 간의 통화 녹음 내용을 모두 청취한 뒤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중재부는 정정보도 게재와 기사의 열람차단을 피신청인 언론사에 권유하였고, 언론사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조정성립사항

정정보도문

보도제목: <B 부친 인터뷰> 관련 정정보도문

본문내용: 본 인터넷신문은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해 사실 확인 결과, B 씨의 부친은 피해자 모임 관계자와 통화 당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딸의 학폭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얘기한 바가

인없는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연예>방송 섹션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게재한 이후 24시간 동안 고정하여 게재하며,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 본문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24시간 게재 이후에도 정정보도문이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열람차단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를 기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삭제한다.



사례 5 2021서울조정1558·1559·1560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보도, 손해배상 50만 원)

C 교수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신청인이 트로트 가수 B를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C 교수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 씨(신청인)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보도하면서, A 씨는 이전에도 트로트 가수 B를 모욕한 혐의로 ‘악플러 예방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나는 무혐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바 있다고 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트로트 가수 B에 대한 모욕 혐의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음에도 피신청인 언론사가 모욕죄가 인정되었다고 보도했고, 자신이 “무혐의를 받았다”고 한 것은 트로트 가수 B 사건 관련임에도 C 교수 관련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처럼 묘사한 것 역시 잘못된 내용이라 주장했다. 또한, 자신은 유튜브 등을 통해 C 교수를 괴롭힌 사실이 없음에도 C 교수의 일방적인 제보를 기사화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트로트 가수 B 관련 고소 사건에서 신청인이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모욕죄가 인정되었다고 사실관계를 잘못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겠으나 손해배상까지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신청인도 손해배상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민사소송보다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하면서 상징적 의미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유하였고, 양 측이 중재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C 교수는 “최근 B 안티카페의 회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뒤로 8명가량이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해 저를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히고 있다”며 “이에 동조한 유튜버 3명의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정도가 커 형사소송을 내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C 교수는 “이들 외에도 앞서 B에 대한 모욕죄가 인정됐으나 재발 방지 약속과 ‘악플러 예방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된 남성도 같은 혐의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 교수는 “이 남성은 자신의 카페에 ‘나는 무혐의를 받았다’는 글을 올리는 등 저의 명예를 또 한 번 실추하는 행위를 했다”며 고소 사유를 설명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정정보도문

보도제목: [정정보도] <‘B 수호천사’ C “명예훼손·모욕·허위사실 유포 … 좌시 안 할 것”>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에서 가수 B 씨에 대한 모욕죄가 인정되었으나 재발 방지 약속과 ‘악플러 예방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되었고, C 교수에 대한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를 받았다’고 온라인상에 글을 올린 남성을 C 교수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남성은 가수 B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받았으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C 교수 모욕 혐의에 대해서 온라인상에 ‘무혐의를 받았다’고 글을 게시한 바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연예섹션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게재 시점부터 24시간 동안 연예섹션 기사목록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조정대상기사와 구별할 수 있도록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게재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사례 6 2021총복조정25/26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 및 반론보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청인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지역사회 연쇄감염에 영향을 미쳤다는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공무원인 신청인이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광역단체의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인후통 증상이 있었음에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지 않고 병원에서 일반 진료를 받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신청인이 감염원으로서 동료 직원의 추가 감염을 유발하는 등 지역사회 연쇄감염에 큰 영향을 끼쳤고, 이로 인해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감염원'이라는 용어가 감염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예단하게 할 수 있어 수정이 필요하고, 자신이 지역 내 추가 확진자들의 감염원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연쇄감염에 영향을 끼쳤다고 확정적으로 보도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지자체의 확진자 현황 공시에 쓰인 용어에 맞추어 감염원을 접촉원으로 정정하고, 신청인이 추가 확진자들의 감염원이 맞는지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반론보도로 협의해 볼 것을 권고했다. 양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 팀장이 23일 직위 해제됐다. 행정명령은 물론 복무지침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면서 ○○군 공무원발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한 결과다. [중략] A 팀장은 같은 과 B 팀장과 휴가 나온 군인의 감염원으로 지역 연쇄 감염에 큰 영향을 미쳤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정정 및 반론보도] ○○군청 공무원 코로나19 확진 보도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를 통해 ○○군청 □□과 소속 A 팀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같은 과 공무원 등 추가 확진자들의 감염원으로서 지역 연쇄 감염에 영향을 미쳐 방역수칙 위반을 이유로 직위 해제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군청의 확진자 현황 공시에 따르면 A 팀장은 동료 공무원과 휴가 중인 군인의 ‘감염원’이 아닌 ‘접촉원’으로 명시돼 있음을 확인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A 팀장은 “본인과 B 팀장이 지난 ◇월 ◎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바, A 팀장이 B 팀장의 감염원이라는 확정적 근거는 없으며, 또한 휴가 나온 군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시점도 지난 ◇월 ☆일이고 장례식장에서의 접촉자도 다수인 점에 비추어 A 팀장이 위 군인의 감염원이라고 확정하기도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신문 <종합>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뉴스-사회>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그 제목과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하게 표시하고,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이어 게재한다.
- 최초 게재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이 <뉴스-사회>면 기사목록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기사 DB에 보관하여 지속적으로 열람·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7 2021서울조정1978/1979/1980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방송, 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보도, 열람차단)

고교생들이 계곡 수심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다이빙을 하다 익사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방송하고, 기사의 열람을 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계곡에 놀러간 고교생들이 수심을 확인하지 않고 5m 높이 바위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익사 사고가 발생했다고 방송 뉴스 및 교양 프로그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이유

사망한 고교생의 부모인 신청인들은 지자체의 상수도 공사로 계곡물이 갑자기 흙탕물로 변해 수심을 가늠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학생들이 수심을 무시한 채 5m 높이의 바위에서 다이빙을 하다 사망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이로 인해 사자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유가족 역시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물놀이 사고가 만연한 여름철에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공익성 보도를 한 것이어서 정정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중재부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뉴스 프로그램 보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는 해당 뉴스를 열람차단하는 것으로, 교양 프로그램 보도에 대해서는 방송과 인터넷에서 모두 정정보도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아울러 피신청인 언론사는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영상도 열람차단하는 것에 합의했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정정보도문

보도제목: [정정보도] <○○ □□계곡 고교생 2명 사망사고> 관련

본문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에서 ○○군 □□계곡에서 고교생 2명이 높이 5m 바위에서 다이빙을 하여 익사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본 방송에서 인용한 목격자는 실제로 사고 순간을 목격한 것이 아닌 점, 높이 5m 바위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린 다이빙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가 아닌 점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정정보도문을 ◇◇◇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 프로그램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 첫 번째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24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이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들을 공급한 네이버, 다음 등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열람차단

- 조정대상기사②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더 이상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영상도 더 이상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사례 8 2021총복조정30/31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국가기관
피신청인 유형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 및 반론보도)

신청인 기관이 불법영업 신고에도 봐주기식 단속을 하는 등 유흥업소와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 기관 소속 지구대가 불법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도 코로나19 불법영업을 방관하여 무능 또는 유흥업소와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불법영업 특별단속 기간 동안 해당 지구대는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단 한 건의 적발실적도 올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기관은 신고를 받은 직후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업소 출입문이 잠겨 있어 출입문 강제 개방을 위해 방역지침 주무부서인 구청 단속반을 기다려야 했고, 이런 이유로 즉각적인 단속이 어려웠음에도 유흥업소와 유착 관계로 봐주기식 단속을 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잘못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불법 성매매를 단속하지 못한 것처럼 표현하면서 경찰청 특별단속 기간 중 해당 지구대 관할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의 단속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보도한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보도 내용 중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바 없고, 단지 의혹을 제기한 것이므로 유착 의혹에 대한 정정보도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신청인 기관의 직무 특성상 의혹 제기 보도를 할 경우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정정보도 및 일부 반론보도를 권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경찰이 유흥업소 불법영업에 대해 봐주기식 단속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을 피한 업주와 손님은 매번 겪은 일인 양 여유 있는 태도로 경찰을 비웃는 모습까지 보였다. [중략] 경찰의 무능 또는 유착관계가 의심되며 코로나19 불법영업을 방치하는 순간이다. A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18분부터 22분 사이 해당 유흥업소에 대한 불법영업 신고가 3차례 접수됐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유흥업소 직원과 실랑이 끝에 내부로 진입했으나 영업흔적을 지우고도 남을 시간이 흐른 뒤였다. 112 신고접수 시간과 B 씨 등이 비밀통로로 올라온 시간의 시차는 50여분 남짓이다. 이 시간동안 유흥업소 직원들이 영업흔적을 지웠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비밀통로를 이용해 숙박업소에 올라온 이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 [중략]

○○경찰청은 지난 X월 X일부터 Y월 현재까지 오후 10시 이후 불법영업(유흥업소 및 노래연습장 대상)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 기간 ○○경찰은 7개 업소 (㉹㉹4·◇◇1·▷▷1·△△1)를 적발했다. 하지만 ○○ 대표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 □□동에서의 적발사례는 0건이다.

조정성립사항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정정 및 반론보도] ○○경찰-유흥업소 유착 의혹 보도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에서, 방역지침 위반 영업에 관한 신고를 받고도 A경찰서가 관내 유흥업소에 대한 이른바 봐주기식 단속을 한 데에 해당 업소와의 유착 의혹이 있으며, ○○경찰청 특별단속기간 내 해당 지역 단속실적도 '0'건에 그쳤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단속건수와 관련, 0건으로 보도된 것은 ○○경찰청의 통계누락에 따른 것으로 사실 확인 결과, X월 X일부터 Y월 Y일 현재까지 특별단속기간 동안 관할 경찰은 ㉹㉹시 □□동에서 총 6건의 불법영업을 적발한 바 있음이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조정대상보도에 관하여, 경찰이 불법 성매매 영업을 묵인한 사실은 확인된 바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A경찰서는 “지면에 보도된 유흥업소 대상 당시 112 신고에 대한 처리과정을 확인한 결과, 경찰과 업소관계자가 평소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112 신고 사실을 업소관계자에게 미리 알려준 사실이 있는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업소관계자에게 유출한 사실이 있는지 등 경찰과 유흥업소 간 유착관계를 의심할 만한 어떤 객관적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신문 <종합>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회>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그 제목과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하게 표시하고, 각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이어 게재한다. 최초 게재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사회>면 기사목록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기사 DB에 보관하여 지속적으로 열람·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위 각 호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9 2021전북조정131·132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 및 반론보도)

공무원이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둔기로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고 보도한 사안과 관련, 언론사가 기사의 열람을 차단한 후에도 조정을 통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기업유치 반대집회 참가자 10여 명이 출근 중이던 군수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하려 접근하는 과정에서 한 집회 참가자가 공무원 A 씨를 둔기로 폭행하여 A 씨가 뇌진탕으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며, 경찰은 폭행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들은 군수 비서실 직원인 A 씨가 휴대폰을 사용해 집회 사진을 촬영하자 집회에 참석한 B 씨가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스티로폼 피켓으로 가리는 과정에서 A 씨와 부딪힌 것을 마치 무거운 둔기를 사용하여 가격한 것처럼 표현하고, 집회 시 경찰이 함께 있어 현장 상황을 경찰이 알고 있음에도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에 있다고 한 것은 악의적 보도라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조정 신청 후 피신청인 언론사는 기사열람을 차단했으나, 신청인들이 정정보도 게재를 원하여 심리가 진행됐다. 신청인들은 정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중재부는 폭행 혐의는 수사 중인 관계로 정정에 한계가 있다며 양 측이 양보를 통해 합의할 것을 권고했고, 협의할 시간을 원하는 신청인 측의 요청에 따라 2차 조정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양 당사자는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정정 및 반론보도] “출근길 공무원, 집회 참가자들에 둔기 폭행” 관련

본문내용: 본보는 조정대상보도에서 ○○군 기업유치 반대집회 참가자 10여 명이 군수의 통행을 가로막자 이를 막기 위해 나선 공무원 A 씨에게 참가자들이 둔기를 휘둘러, A 씨가 병원에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으며, 시민 인터뷰를 인용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배후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하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폭력단체를 색출해 더 이상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이나 단체가 없어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군 기업유치 반대집회 참가자 10여 명이 공무원 A 씨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A 씨가 채증을 위해 다가오자 집회 참가자 한 명이 폼보드로 가로막다가 발생한 사건으로, 폭행 여부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위 집회를 연 ○○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는 ○○군 기업유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에 입주 계약한 한 업체의 닭 도축 공정을 반대하고 있으며,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호남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한다 (게재방식은 통상의 기사와 동일하게 한다).

사례 10 2021충북조정44·45·46/47·48·49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 및 반론보도)

공무원인 신청인이 지역 이권에 개입하여 폭력조직과 연관 있는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보도와 관련, 신청인이 언론사 기자를 형사 고소한 상황에서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군 A 국장이 폭력조직과 유착하여 일감 수주를 도왔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지역 건설업자들과 정기적 모임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골프 회동 후 회식까지 즐기는 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지역에서는 ○○군 공무원 일부가 전통적으로 지역 폭력조직과 유착관계를 가져왔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본인이 관여할 수 없는 민간사업에 개입하여 폭력조직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정기 모임에 건설업자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폭력조직과 관련된 특정업자와 유착하는 등 이권에 개입한 바는 없다고 했다. 또한, 골프를 즐기는 것은 사생활의 영역으로 공직자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언론사의 왜곡보도로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를 게재한 피신청인 언론사의 소속 기자를 고소한 상태였고, 심리 과정에서 조정 합의를 전제로 형사고소를 취소할 의사는 없다고 했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형사고소건 취하 여부에 상관없이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최근 여러 부적절한 행정들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군에서 “A 국장이 조폭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폭로가 나와 지역에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일 폭로내용에 따르면 A 국장이 ○○지역 폭력조직 두목 B 씨와 유착해 지역 이권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군민 사이에선 이미 ○○군 기술직 일부 공무원들이 전통적으로 지역 조폭들과 유착관계를 가져왔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그러던 중 한 제보자의 A 국장에 대한 폭로가 ‘조폭 유착설’에 힘을 실는 분위기다. 제보자에 따르면 자신이 ○○군의 특혜성 행정으로 S과 두목 B 씨에게 일감을 뺏겼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A 국장이 조폭 두목 B 씨를 ○○군 내 공동주택 신축중인 한 업체에 추천해 일감을 수주하게 도왔다”고 주장했다. **[중략]**

이후 A 국장은 지역 건설업자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왔다. 이들과의 정기모임에서 청탁과 이권개입이 논의되지 않았다면 더 이상한 것 아니냐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중략]**

A 국장은 또, 지난 20XX년 지역 산불 발생 당시에도 건설업자들과 □□시에서 골프 회동을 한 후 회식까지 즐긴 모습이 군민에게 포착돼 자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정정 및 반론보도] “◇◇◇◇국장이 ‘조폭’에 일감 몰아줬다” 기사 관련

본문내용: 본보는 조정대상보도에서, ○○군청 소속 국장이 조직폭력배와 유착해 관내 사업의 일감을 몰아주는 등 지역이권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실 내용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국장이 ○○지역 폭력조직 두목 B 씨와 유착해 지역 이권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 “○○군 기술직 공무원이 조폭과 관계를 가져왔다”, “직무 관련 사업자들과 정기적으로 회동한다” 등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군 ◇◇◇◇국장은 “열심을 다한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에 살인행위와 같은 허위 보도로 인하여 몸과 마음의 상처를 가져왔다. 앞으로는 이런 허무맹랑한 보도는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지역>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충남>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표기하고 그 제목을 선택하면 보도문 본문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해당 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이어 게재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시, 최초 게재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이 해당면 기사목록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해당 보도문을 기사 DB에 보관하여 지속적으로 열람·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위 각 호의 사항을 전송한다.

제 2 장

반론보도 게재 사례

제2장 반론보도 게재 사례

사례 11 2021대구조정24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뉴스통신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반론보도)

운영자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후원을 강요하고, 후원금 사용 내역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회원은 강제 탈퇴시키는 등 인터넷 맘카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반론보도를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살림, 육아, 지역 관련 정보 등의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맘카페가 회원 규모가 커지고 지역 내 영향력을 가지자 운영자가 이를 악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지역의 한 맘카페 운영자가 소상공인들에게 광고나 후원을 강요하여 개인통장으로 수익금이나 후원금을 받고, 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는 회원은 강제 탈퇴시키는 등 독선적인 카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신청이유

맘카페 운영자인 신청인은, 맘카페에 개업 광고를 해주는 대가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카페 개설 후 진행한 후원 및 기부 등 활동 내역은 게시글로 알려왔고, 수익금의 상세 내역 공개를 요구하거나 이로 인해 강제로 탈퇴당한 회원이 없음에도 피신청인 언론사가 신청인에게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고 허위의 보도를 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쟁점 내용이 명백한 허위이거나 진실하다는 점을 밝히기 어려운 정황이고, 양 당사자의 의견차도 좁혀지지 않으므로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은 어려우나, 신청인의 반론이 같이 보도되어야 보도 내용에 대해 독자들이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론보도를 게재하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심리에서는 반론보도 게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던 언론사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그러나 안타깝게도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단체의 중심역할을 맡은 모 맘카페 운영자의 독선으로 공개 자료와 찬반토론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고자 한 거버넌스가 난항을 겪고 있다. 맘카페 운영에 있어서도 모금과 후원 그리고 광고비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요구와 회원들 간 민주적 의견 개진에 대한 강퇴로 일관 독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역에서 회원수가 2만 3천 명에 이르는 거대집단인 맘카페에 대한 문제제기에 어렵게 취재에 응한 지역소상공인(식당, 미용실, 커피숍 등)들은 맘카페의 위세에 눌려 개업 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광고(혹은 후원)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2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고 자발적인 광고나 협찬을 한 소상공인도 있을 것이다. 지금도 맘카페에 일주일 혹은 1개월의 홍보글을 올리는 데 맘카페 운영자 개인통장으로 2만 원에서 5만 원을 송금한다고 한다.

맘카페 게시판을 보면 이 같은 광고비가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광고 외에 여러 명목의 모금 혹은 협찬금 등이 운영자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며 카페에 입금내역과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개를 요구한 회원은 강퇴시키고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후략]**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기자수첩] 맘카페의 명암 — 일그러진 두 얼굴> 관련

본문내용: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맘카페 운영자는 “맘카페 개설 이후 광고비, 기부 및 후원금 등의 활동 내역을 공개하도록 요구한 회원은 없으며, 회원을 강퇴시키거나 지역소상공인에게 광고 또는 후원을 하도록 강요한 일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기자수첩면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선택하면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24시간 동안 기자수첩면 기사목록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조정대상기사와 구별할 수 있도록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게재한다.

사례 12 2021총복조정10/11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회사
피신청인 유형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반론보도)

시멘트 제조 시 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화합물을 두고 시멘트 제조 기업과 언론사가 해석을 달리한 사안에 대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반론보도를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는 클링커는 네 가지 화합물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신청인 기업이 생산하는 시멘트에 사용된 클링커에서는 한 가지 성분만 검출되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필수 성분이 전부 포함되지 않은 신청인 기업의 클링커는 폐기물에 해당하여 폐기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했으며, 이러한 클링커를 원료로 만든 신청인 회사 생산 시멘트는 불량품이라고 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클링커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화합물을 규정한 바 없음에도, 네 가지 필수 화합물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신청인 기업의 클링커가 폐기물이라거나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했다. 또한, 한국표준협회의 조사 결과 자사 시멘트 품질이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피신청인 언론사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 신용을 잃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까지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시험기관 등의 회신 내용과 관련해 신청인 기업과 다른 견해를 주장하며 정정보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사실관계 및 양 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적정 수준의 반론보도가 상당해 보인다고 반론보도 게재를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은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 △△ A 공장이 생산하는 클링커(시멘트 반제품)에서 4가지 필수 화합물이 포함 돼 있지 않다는 성분 분석 시험결과가 나와 시멘트 품질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는 클링커는 C3S, C2S, C3A, C4AF 등의 4가지 화합물을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중략]**

시험결과서에 따르면 클링커 4가지 필수 화합물 중 C2S 성분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시멘트 품질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후략]**

※ 다수의 조정대상보도 중 최초 보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A 주식회사 시멘트 품질 보도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를 통해, A 주식회사(이하 'A')가 생산한 시멘트 반제품인 클링커에서 품질관리당국이 규정한 필수화합물 4종 중 일부만이 검출됐고, 해당 필수화합물이 클링커에 모두 포함되지 않은 이상 A의 클링커는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A가 폐기물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A의 시멘트는 불량품이라는 취지로 수차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는 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정한 한국산업표준(KS L 5201)에는 클링커에 대하여 C3S, C2S, C3A, C4AF의 4가지 화합물을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정의를 명시한 바 없고, ② 한국표준협회가 실시한 A △△공장의 클링커 및 시멘트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 4대 원료 성분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시멘트 품질도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③ A의 클링커는 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도 아니고, ④ 결론적으로 A의 시멘트는 불량품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신문 <경제>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제>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표기하고 그 제목을 선택하면 보도문 본문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표시되도록 하며, 각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이어 게재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시, 최초 게재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반론보도문 제목이 해당면 기사목록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해당 보도문을 기사 DB에 보관하여 지속적으로 열람·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13 2021서울조정631/632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국가기관
피신청인 유형	방송, 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군 영상감시병의 임무 해태로 감시 장비에 포착된 귀순자 확인이 늦어졌다는 보도와 관련, 방송을 통해 반론을 보도하는 대신 인터넷 다시보기의 조정대상보도 영상에 반론보도문을 덧붙이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북한 남성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헤엄쳐 내려오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는 등 귀순자의 동선이 중간 중간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되었음에도, 경계병이 줄고 있었던 관계로 신청인 부대는 상황을 빨리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합동참모본부 조사 결과, 신청인 부대 영상감시병은 경보 알람을 오작동으로 판단하여 알람창을 껐고, 정상 근무 중인 사실도 CCTV 녹화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 언론사는 감시병들이 자고 있었다고 단정하는 왜곡보도를 해 부대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정정보도는 받아들일 수 없으나, 반론보도는 방송 외 매체를 통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청인 부대는 방송을 통한 보도가 어렵다면 인터넷 다시보기 영상 말미에 자막으로 반론보도문을 삽입하고, 유튜브 영상에도 이를 동일하게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고, 피신청인 언론사가 신청인 부대의 요구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9년 전 노크귀순, 3개월 전 철책을 가볍게 월담한 귀순에 이어, 이번에는 오리발을 끼고 헤엄쳐 온 남성에게 육군 A사단이 또 뚫렸다는 사실이 어제 보도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남성이 우리 초소 CCTV에 처음 포착됐을 때 병사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중략]**

이 남성의 동선은 중간 중간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지만 군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관찰하는 A사단 병사가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계 상으로 찍혀 있었는데 이게 넘어간 것도 모르고. 그땐 아마 감시병들이 잤든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동해안 북한 남성 귀순 관련

본문내용: 본 방송은 지난 조정대상보도에서 남쪽으로 헤엄쳐 귀순한 북한 남성이 CCTV에 처음 포착됐을 때 육군 A 사단 병사들은 자고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 A 사단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북한 남성 귀순(추정) 당시 영상감시병은 졸지 않고 임무를 수행 중 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24시간 동안 초기화면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다시보기 영상 말미에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자막으로 표시하여 내보낸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 유튜브 채널에도 위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조치한다.



사례 14 2021서울조정890/891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국가기관
피신청인 유형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코로나19 백신을 조기에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는 백신 업체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거절하여 조기에 백신 물량을 확보할 기회를 놓쳤다는 보도와 관련, 객관적 진실 파악은 어려우나 신청인 측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정부가 백신 생산업체인 B 측과 300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 추가 물량 계약을 논의할 당시, 업체 측으로부터 더 많은 백신을 구매하면 백신의 조기 공급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조기에 백신 물량을 확보할 기회를 놓쳤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기관은 최대한 많은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음에도, 더 많은 물량을 조기에 공급하겠다는 업체의 제안을 신청인 기관이 거절하는 등 백신 확보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한 신청인 기관의 노력이 폄하되고, 신뢰도에도 타격을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취재원의 공개 없이는 업체의 백신 공급 관련 제안이 실재했는지 입증하기 어렵고, 신청인 기관의 반론이 보충될 필요는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방안을 권유했다. 양 당사자가 중재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반론보도 게재로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정부가 지난 2월 B 측과 300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 추가 물량을 계약할 당시 “백신을 더 많이 사면 더 많은 물량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다”는 B 측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백신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물량을 더 구하지 않은 건 명백한 실책”이라고

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추가 계약이 논의될 당시 B 측은 “백신 물량을 더 많이 구매하면 더 많은 물량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300만 명분 구매 의사를 보였고 이에 따라 추가 계약 물량도 그만큼만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2월 추가 계약을 공식 발표하면서도 300만 명분만 확보한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알려드립니다]

본문내용: 본지의 조정대상보도와 관련, A 기관은 “B 측으로부터 ‘백신을 더 많이 사면 더 많은 물량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신문 2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 부제목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며, 본문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섹션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24시간 동안 사회섹션 기사목록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15 2021서울조정1236·1237·1238/1239·1240·1241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방송, 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보도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반론보도를 게재하되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보도청구가 가능하도록 부제소 조항을 조정하여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세 살배기 아이의 몸에서 발견된 멍을 보고 의사가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다른 아이들도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등 이상 행동을 하는 트라우마를 호소하자 부모들이 집단 고소를 결심했다며 학대 정황은 어린이집 CCTV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신청인은, 아동학대 관련 신고는 의사가 아닌 학부모 A 씨가 직접 한 것으로 의사가 학대를 의심하여 신고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A 씨가 주장한 학대 날짜를 포함해 해당 아동의 입소부터 퇴소일까지의 모든 CCTV 영상을 학부모 등과 확인한 결과 학대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아동들이 스스로 머리를 때리는 영상도 어린이집 CCTV에 찍힌 영상이 아니라 학부모가 직접 찍은 영상임에도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의 학대로 인해 이상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아동학대 의혹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당장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반론을 보도하되,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부제소 조항을 조정해 합의할 것을 권유하였고, 양 당사자가 중재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이후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받은 신청인은 동일 보도에 대해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조정 심리 전 언론사가 추후보도를 방송할 것을 피신청인에게 약속하여 신청인이 조정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분쟁이 종결됐다.

조정대상보도

○○ □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세 살배기들이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아이들이 비슷한 행동을 하는 트라우마를 호소하자 부모들은 집단 고소를 결심했는데, 어린이집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중략]**

세 살배기를 ○○ □구 한 어린이집에 보낸 A 씨는 얼마 전 아이의 몸에서 시퍼런 멍을 발견했습니다. 알려지일 것이라 생각해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는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A 씨 / 어린이집 아동 부모 〉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 기저귀를 갈 때 애기가 움직일까봐 꼭 잡는다고 잡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도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A 씨 외에 다른 부모 3명도 자신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모두 3세반 부모들로, 이들은 CCTV에서 학대 정황을 봤다고 말합니다.

〈 B 씨 / 어린이집 아동 부모 〉 “선생님이 발로 차고, 팔을 잡아당기고, 머리카락 잡아당기고 이런 식으로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 ”

어린이집에 보낸 뒤 아이들에게서 이상행동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 C 씨 / 어린이집 아동 부모 〉 “자기 머리를 때려요, 선생님 눈치를 보면서. 지금 4명의 아이가 똑같은 증상이에요.”

전문가는 이를 두고 불안에 의한 행동이라고 분석합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 □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 관련

본문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 등에서 ○○ □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세 살배기들이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며, 어린이집 CCTV에서 학대 정황을 봤다는 등의 학부모들 인터뷰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은 “A 씨 자녀의 몸에 생긴 멍은 학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어린이집에서 CCTV를 확인한 결과 아동학대 정황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아이들이 보이는 이상행동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안증세로 보인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뉴스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24시간 동안 초기화면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뉴스서비스에 한함)에게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 이 사건 조정대상 보도 다시보기 영상을 공급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동영상서비스(TV에 한함) 및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위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조정대상 보도 및 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단, 추후 보도 청구는 제외)을 묻지 아니한다.

사례 16 2021서울조정1242·1243·1244/1245·1246·1247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회사
피신청인 유형	라디오, 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유명 돈까스 가게의 원조 논란 보도와 관련,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보도 영상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조정대상보도를 한 라디오에서는 유튜브 다시보기에 반론보도가 게재된 사실만을 알리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유명 돈까스 가게의 원조 공방 논란을 다루면서, 건물주인 주식회사 A가 자신의 건물에서 돈까스 가게를 운영하던 임차인 B 씨를 쫓아낸 후 B 씨의 ○○돈까스 상호를 그대로 사용한 채 사업을 영위하여 원조 논란이 불거졌다고 보도했다. 언론사는 해당 논란에서 주식회사 A가 임차인 B 씨를 가리켜 임차인이 아닌 위탁운영자라고 칭한 것은 거짓말이고, B 씨와 맺은 계약이 종료된 후 ○○돈까스를 상호에 넣어 주식회사 A를 설립하고 돈까스 음식점을 운영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회사는 여러 해 법적공방을 벌여온 B 씨가 유튜버와 공모하여 올린 영상에 대응하기 위해 공식 입장을 인터넷에 게시하면서 B 씨를 위탁운영자라고 지칭하였는데, 이는 돈까스 음식점이 신청인 회사 가족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B 씨의 임차인 지위를 부인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돈까스는 일반 명사화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될 수 없고, 따라서 신청인 회사가 상호에 ○○돈까스를 사용한 것을 부정경쟁행위라 볼 수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신뢰도가 저하되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중재부가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한해 반론을 신는 방안을 제시하자, 신청인 회사는 매체 파급력을 고려하여 라디오 프로그램뿐 아니라 유튜브 채널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재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포기하고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신청인 언론사가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반론보도 게재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C : 이분이 주장하기로는 B 씨가 단지 위탁 경영을 했고, 그리고 이분이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가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내쫓았다라고 했는데....

D : 그렇게 반박을 했네요.

C : 판결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D : 아, 그래요? 네.

C : 지금 이 나간 나가서 새로 식당을 차린 이분은 어... 임차인이었어요. 그 가게의 임차인.

[중략]

C : 공유자 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게 20XX년도거든요. 그 때 임대차 조건에 관해서 다툼이 생겨서 그 더 이상 영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조건을 다르게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영업을 못 하겠다고 영업을 중단한 거지 마치 위탁 경영을 하다가 문제를 일으켜서 쫓겨난 이런 게 아니에요.

D : 아, 위탁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

C : 아니다.

D : 점포 빌려서 거기서 그냥 본인들의 장사를 하고 있었다. [중략]

C : 그래서 거기 줄을 서서 먹게 되는 맛집으로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뭐 임대인이 건물주로서 나가라고 할 수는 있어도 그 상호를 그대로 쓰면서 ○○돈까스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뭐 이걸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중략]

C : 심지어 간판 색깔도 똑같고, 그 뭐 사실은 그 전에는 Since 19XX라고 쓰여 있을 정도로 그 전 영업자의 모든 것을 표지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두 이용했다면 이거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이거는 금지행위로...

D : 부정경쟁방지법이 있군요.

C : 네 그런데 이 법을 알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①

보도제목: [반론보도] ‘○○ 돈가스 원조 공방’ 관련

본문내용: 조정대상보도 관련해서, xxx번지 ○○돈가스 측에서 “xxx번지에 위치한 ‘○○돈가스’는 개업한 이래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20XX년 임대인과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 ○○돈가스 상호로 계속 영업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의 예로 제시된 해운대암소갈비 사건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반론보도문②(라디오 낭독)

‘○○돈가스 원조 공방’과 관련해서, xxx번지 ○○돈가스 측에서 반론을 전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방송 유튜브 채널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방법

-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영상하단에 반론보도문①을 통상의 방식으로 게재한다.
- 라디오 프로그램 해당 코너 시작부분에서 반론보도문①이 유튜브 다시보기에 게재되었음을 알리는 반론보도문②를 진행자가 낭독하는 것으로 한다.



사례 17 2021서울조정2114, 2021서울조정2115(병합) 각 반론청구

신청인 유형	국가기관
피신청인 유형	방송, 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반론보도)

경계성 장애로 지적 능력이 낮은 여중생의 피해 진술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경찰이 가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반론보도를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경계성 장애가 있는 여중생(A 양)이 고교생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는데, 지적 능력이 낮은 A 양이 피해 사실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자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성폭행으로 인정해야 할 사건을 성매매로 결론 낸 7년 전 ‘○○○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피해자 조사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라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 수사에 반영했고, 현장 CCTV 분석과 피해자 친구들의 진술 등을 혐의 유무 판단에 고려했음을 이유로 밝혔다. 조사 끝에 강간 등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으며, 「아동복지법」상 성학대 혐의는 인정되어 송치 결정을 한 것인데,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가 반론보도로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중재부는 사안을 검토한 후 반론보도가 이뤄지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면 반론보도 게재를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 당사자 모두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여중생이 고교생들에게 집단 성폭행 당했지만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사건은 7년 전 이른바 ‘○○○ 사건’과 똑 닮았습니다.

경계성 장애가 있는 여중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는데 진술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 못 한 사건입니다. **[중략]**

지난해 □월 ◇◇도 ◎◎에서 고등학생 3명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털어놓은 만 12살 A 양, 수사에 들어간 경찰이 내린 결론은 가해자들에게 ‘혐의가 없다’였습니다.

지적 능력이 낮은 A 양이 피해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이유로 동의한 성관계였다는 가해자들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중략]**

A 양 사건은 지난 20XX년 가출한 뒤 20 ~ 30대 남성 7명에게 성폭행 당했던 이른바 ‘○○○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만 13살 ○○○는 IQ 70 정도로, 경계성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경찰과 검찰은 피해 상황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성 매수 혐의만 적용했는데 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후략]**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경계성 장애아인데 가해자 말만 믿고”...‘○○○ 사건’과 판박이 관련
본문내용: 본 방송은 위와 같은 제목의 조정대상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B 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제33조에 따라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 및 진술에 관한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을 수사에 반영하였고, 현장 CCTV 분석 및 피해자 측 친구들의 진술을 토대로 강간 등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아동복지법상 성학대 혐의는 인정되어 ‘송치 결정’한 바, 단지 피해자의 진술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②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한다.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를 공급한 네이버, 다음 등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18 2021부산조정81·82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공기업 사장에 응모한 신청인이 해당 공기업 임원 재직 당시 상급 기관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감사원에 적발된 바 있고, 노조의 경영본부장 재연임 찬반투표에서 불신임을 받아 퇴직하였다는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A교통공사 사장 선임에 응모한 전직 A교통공사 임원 B 씨에 대한 논란을 조명하면서, B 씨가 재직 중 안전행정부 공기업평가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되었음에도 지자체는 이를 은폐하고 A교통공사에 징계 요구도 하지 않았고, B 씨는 핵심요직만 거쳐 오면서 인사를 장악해 노조원들의 반발을 샀으며, 경영본부장 재연임에 대한 노조의 압도적인 반대로 퇴직을 하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노조의 재연임 찬반투표와 무관하게 공사 재직 중 임원의 임기가 끝나 퇴직한 것이고, 공사의 다른 임원에게 권고 사직서를 징구한 사실도 없었다고 했다. 또한 공기업 평가를 담당하던 부서장으로서 회사와 구성원 전체를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 감사원이 사회상규상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어떤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이고, 인사권자의 뜻에 따라 여러 보직을 경험한 것임에도 이를 부정적으로 보도하여 명예훼손은 물론, 사장 공모 서류심사에서 탈락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의 반론5권이 보장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며 반론보도 수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신청인은 반론보도 게재와 함께 조정대상보도의 단정적인 표현도 수정해주기를 요청했다. 중재부는 반론보도 합의와 별도로 조정대상보도의 일부를 수정해줄 것을 피신청인 언론사에게 제안하였고,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A교통공사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밀실 심사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응시자 중 공사 임원을 지낸 B 씨에 대해 재직시절 상급 기관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사실을 A사가 은폐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A사는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당사자에 대해 징계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다 A시의회의 자료 요구조차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논란의 당사자인 B 씨는 지난해 A교통공사 노조의 경영본부장 재연임 찬반투표에서도 96% 이상의 반대로 불신임을 받아 퇴직한 바 있으며, 재직 시절 부구청장 출신인 공사 임원에 대해 권고 사직서를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해까지 공사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쳐 왔으며, 지난 20XX년 인사업무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안전본부장에 연임됐다가 공사 사상 유례가 없는 보직변경을 통해 부서를 이동하는 등 인사권에 관여하려는 움직임에 노조원들의 반발을 샀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A교통공사 사장 응시자 B 씨 관련 반론보도

본문내용: 본 인터넷신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A교통공사 사장에 응시했던 전 경영본부장 B 씨가 안전행정부 간부에게 금품을 제공해 감사에 적발되었으며, A교통공사 노조의 경영본부장 재연임 찬반투표에서 불신임을 받아 퇴직한 응시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도의 당사자인 전 경영본부장 B 씨는 “당시 금품 제공 사건은 공사 업무 중에 생긴 일로써 사회상규에 크게 반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판단에 따라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았으며, 노조의 재연임 찬반투표와 관련 없이 임기 종료에 의하여 당연 퇴직한 것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공사 임원에게 권고사직을 권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그럴 위치도 아니었다”며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정치사회면 상단에 반론보도문을 12시간 게재한다. 제목 및 본문 활자 크기는 통상의 크기로 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나오게 한다. 12시간 게재 후에는 반론보도문이 검색되도록 조치한다. 또한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조정대상기사와 구별할 수 있도록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게재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19 2021서울조정2833·2834·2835/2836·2837·2838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방송, 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기초 지자체가 정화작업을 마치지 않은 슬러지를 타 광역 지자체 하수처리장으로 보냈다는 의혹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 인터뷰 발언 중 일부만 발췌하여 방송한 것은 신청인의 발언 취지를 왜곡한 것일 수 있어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기초 지자체 A시와 A도시공사가 하수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정화작업을 마치지 않은 하수 찌꺼기를 광역 지자체 B시의 하수처리장으로 몰래 방류하였다고 환경시설 관련 노동조합의 주장을 빌려 보도했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보도에 A도시공사 관계자인 신청인의 인터뷰 발언 중 '전체적으로 보아 비중이 미미하다면 오염을 시킨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발췌 삽입했다.

■ 신청이유

현직 A도시공사 팀장인 신청인은 하수처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차 방문한 기자에게 한시적으로 하수를 방류했던 이유가 하수처리장 정상화 개선 공사와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임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예시를 들어 비유적으로 설명한 인터뷰 부분을 피신청인 언론사가 전체 취지와 다르게 편집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A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하수를 B시로 방류하는 것처럼 전달되어 회사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신청인이 조정대상보도로 인해 회사에서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최소한 반론보도는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피신청인 언론사는 보도된 인터뷰 내용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 측이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A시가 정화작업을 마치지 않은 하수 찌꺼기가 섞인 물, 즉 슬러지를 B시 모르게 BOO 하수처리장으로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조 측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인데, A시는 일단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중략]** 노조 측은 슬러지 건조처리에 드는 약품 비용을 아끼려고 별인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체 처리할 슬러지를 OO처리장에 보내 B시에 처리 비용을 사실상 떠넘겼다는 겁니다.

B시 측은 “그런 배관이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환경 전문가도 자체 정화 과정에 있는 오염 물질을 B로 보낸 이유에 의문을 드러냅니다.

[중략]

A도시공사 측은 배관 가동 사실은 인정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A도시공사 관계자(지난 ▲일)]

“강에 가서 내가 오줌을 똥어, 근데 이게 오염시킨 거냐 이거지. 전체적으로 보기에선 다 진짜 미미하기 때문에.”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A시, ‘하수 찌꺼기’ B로 몰래 방류」 관련

본문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에서 A시가 20XX년부터 지난해까지 찌꺼기와 물이 섞인 슬러지를 B시 OO 하수처리장으로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A도시공사 측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반응했다며 관계자 인터뷰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도시공사 관계자는 “A 하수처리장의 분리막 시설 고장 등 비상상황에 따른 조치로 20XX년 9월부터 20YY년 3월까지 약 6개월간 중간처리 단계에 있는 반송 하수를 B시 OO 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한 것이고, 인터뷰 내용은 반송 하수가 OO 하수처리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취지로 예시를 든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24시간 동안 초기화면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뉴스서비스에 한함)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다시보기 영상을 공급한 네이버 TV와 카카오 TV 및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위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조치한다.

사례 20 2021경기조정368·369·370/371·372·373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회사
피신청인 유형	방송, 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A시가 특정 회사에 인허가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는 보도 관련, 반론보도를 우선 게재하고 언론사가 준비 중인 후속보도는 감사 결과가 나온 후 방송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A시가 주민들의 동의 없이 대형물류센터 건립 허가를 내주었는데, A시는 업체가 허가를 신청한 창고가 일반창고가 아닌 7층 규모의 물류센터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일반창고 허가 신청을 묵인해주어 인허가 과정에 특혜가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언론사는 물류센터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통학 안전 확보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가 높고, 지역시민단체에서도 교통 대란과 사고를 우려하는 반대 집회를 이어가는 등 많은 주민들이 물류센터 착공에 거센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회사는 건축물이 창고인지 물류터미널인지를 구분하려면 건축물 전체의 주된 용도를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신청인이 건축하려는 시설의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창고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창고시설임이 명백하고, 이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고 하며, 신청인 회사의 허가 신청에 문제가 있었고 A시에서 이를 눈감아주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창고 인근에 학교나 주거단지가 직접 접해있지 않아 주민생활에 별다른 영향이 없음에도 해당 보도로 인해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사안을 검토한 후 현 시점에서는 반론보도가 타당해 보인다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신청인 회사는 반론보도에 더하여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추가보도를 내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신청인 언론사가 이를 수용하여 반론보도 게재와 함께 후속보도의 보도시점을 유예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A시가 주민 동의 없이 대형물류센터 인허가를 내주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공사 규모로 볼 때 단순 보관용 일반 창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A시가 이를 묵인해줬다며 집단반발에 나설 것으로 보여 향후 상당한 마찰이 예상됩니다. **[중략]** 수도권 물류 수요 증가로 인한 물류 허브 역할을 위해서라는데, 문제는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해당 업체가 일반창고로 허가를 신청했는데, A시가 7층 규모 대형물류센터임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아준 겁니다.

이에 대한 A시의 입장은 모호했습니다.

허가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면서도 일반창고와 물류센터의 법적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중략]**

지역시민단체는 물류센터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통학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B / □□발전연합회 위원

- “사기업의 이윤 추구 외에 어떠한 사회적 가치도 없고 공익도 추구되지 않는 이 건축허가를 국가공무원이 내렸다는 거에 대해 화가 났었고, 사기업이 돈 버는 데 주민들과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시행사 측은 일반창고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교통유발계수가 낮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알림보도] A □□ 물류센터 보도 관련

본문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주식회사 C가 물류센터를 창고로 허가 신청한 것을 A시가 알면서도 허가를 내줘 특혜 의혹이 있고, 물류센터 인근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통학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C 측은 “해당 사업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창고 시설만 건축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 C의 설계도서를 보면 해당 건물은 물류터미널이 아닌 창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A시 허가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 또한 사업지와 학교는 직선거리로 650m, 도로로 1.0km 이격 되어 있어 교통안전에도 영향이 없으며, 시행사는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앞 도로로 차량이 통행하지 않도록 확약할 예정”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12시간 동안은 뉴스면 주요뉴스목록 상위 5번째 이내에 나타내게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하여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반론보도문이 나오게 한다. 12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도 반론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조정대상기사 본문 각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조정대상기사와 구별할 수 있도록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게재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 향후 신청인의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한 후속보도는 감사원의 A시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사례 21 2021서울조정2893/2894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회사(언론사)
피신청인 유형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신청인 언론사가 방송작가에게 계약 외 업무를 지시하고도 추가 급여를 지불하지 않았고, 계약 관련 항의를 하자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보도와 관련, 피신청인 언론사가 반론을 인터넷 기사에 사후 반영하였으나 지면신문에도 반론보도를 추가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TV가 6년간 방송작가로 일했던 A 씨에게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지시하면서도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 관련 항의를 하자 일방적으로 A 씨와의 계약을 해지하며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노무사의 견해에 따르면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아울러 채용 당시부터 A 씨를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으로 대하며 정규직 기사가 하는 업무를 맡기는 등 필요할 때는 직원처럼 일을 시키고, 불리할 때에만 프리랜서로 대했다고 지적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언론사는 보도에 언급된 A 씨는 주로 국내 기사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일을 담당한 프리랜서이지 방송작가가 아니고, 업무위탁계약서에 명시된 리포트 1개와 단신 기사 3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계약금액은 모두 정상 지급되었으므로, 계약서에 없는 일을 시키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A 씨는 취재 없이 PD가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직접 취재를 해야 하는 정규직 기자의 업무형태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기자들이 선배 호칭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음에도 피신청인 언론사가 제보자의 주장에만 치우친 보도를 하여 신청인 언론사의 이미지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보도 이후 신청인 언론사의 주장을 인터넷 기사에 반영하였으므로 반론의무를 다하였다고 항변했다.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가 지면에도 실린 점을 고려하면, 인터넷기사에만 반론을 반영한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지면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권고하였고, 양 당사자가 권고안을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TV 지휘 아래 매일 출퇴근하며 6년간 일한 ‘무늬만 프리랜서’ 작가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에 나섰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작가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고 사측의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뒤집고 회사 손을 들어준 상황이다. **[중략]**

A 씨는 20XX년 1월부터 만 6년 매일 아침 서울 □□구 ○○○TV에 출근했다. 그는 ○○○TV가 방송하는 10시 뉴스와 12시 뉴스 프로그램에 쓰일 기사를 작성했다. 개수와 내용, 형식은 ○○○TV 측 지시에 따라 날마다 달랐다. △△보도센터장과 PD가 지시할 때마다 영어 자막, 정규직 기자가 쓴 리포트 녹음, 기자 자막 교육 등 업무를 수행했다. 모두 계약서엔 없던 일이다. 회사가 따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업무이기도 하다.

○○○TV 측은 채용할 때부터 그를 ‘직원’으로 대했다. ○○○TV는 작가 모집 “전형 일정”으로 서류와 필기시험, 1차면접과 최종면접을 실시했다. **[중략]**

A 씨 이후 입사한 기자들은 그를 ‘선배’라 불렀다. 그도 먼저 일한 ○○○TV 직원들을 ‘선배’라 했다. 정규직 기자와 업무가 뒤섞이기도 했다. 데스크가 A 씨가 쓴 기사를 보고 ‘이건 추가 취재를 해봐야겠다’며 기자에게 넘기는 식이다.

계약에 없는 추가 업무도 일상이었다. 담당 PD가 지시하면 주말용 기사를 추가로 작성했다. 오후 5시에 쓸 기사도 수시로 지시 받았다. 수당은 없었다. **[중략]**

A 씨에 따르면 PD는 그해 계약 기간이 끝나가던 지난해 12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 씨는 지난 ◇월 ◇일부로 ○○○TV와 계약이 해지됐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6년 출근 ○○○TV 작가 “필요할 땐 직원, 불리할 땐 프리랜서”> 관련

본문내용: 본보는 조정대상보도에서 ○○○TV가 프리랜서 작가에게 정규직 기자가 하는 업무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업무를 급여 지급 없이 지시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TV 측은 “해당 작가는 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한 바 없으며,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대금을 지급하였고, 해당 작가가 먼저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신문 2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며, 본문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제 3 장

추후보도 게재 사례

제3장 추후보도 게재 사례

사례 22 2021서울조정316, 2021서울조정317(병합) 각 추후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방송, 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추후보도)

빙상 코치의 성추행 혐의 보도와 관련, 검찰이 혐의를 내사종결로 각하 처리한 것은 추후보도청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양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는 객관적 사실만을 알리기로 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빙상계 성폭력 문제를 조명하면서, 전직 스케이팅 선수 A 씨가 고등학생 시절 B 코치에게 상습 성추행을 당했으며, B 코치가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노골적인 성추행을 하고 폭언을 퍼붓는 등 2년간 A 씨를 괴롭혀 A 씨는 선수생활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일부 젊은 빙상인들이 C연대를 구성하여 빙상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D 씨와 그 주변인들을 공격하기 위해 사실 여부 확인 없이 무차별 투서를 하였고, 자신은 허위 민원에 휘말려 음해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A 씨의 어머니가 A 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날 후에도 계속 강습을 받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만 보더라도 자신이 제자를 상습 성추행하고 폭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A 씨는 피해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검찰이 관련 혐의에 대해 최종 각하 처분을 내렸으므로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고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검찰이 신청인에 관한 진정내사 사건을 각하로 내사종결 처리한 것은 언론중재법상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추후보도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중재부는 각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을 추후보도로 반영해 주는 방안을 당사자들에게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다음은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체육 지도자 성폭력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한 스피드스케이팅 지도자가 선수를 성추행했었다는 의혹,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피해자가 저희 취재진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을 직접 털어놨습니다. **[중략]**

[A 씨/前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 제가 이런 걸 말함으로써 더 나아지는 운동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결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대학교에서 훈련하던 고등학생 시절 B 코치로부터 상습 성추행을 당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A 씨/前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 뽀뽀하고 그런 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했었고, 껴안는 건 기본이었고, 카톡이나 실제로 만나서 사랑한다, 영화도 따로 보자고...]

노골적인 성추행과 함께 폭언도 비밀비재했다고 말했습니다. **[중략]**

A 씨는 2년간 이어진 상습 성추행에 팀을 옮겼지만, 이후에도 빙상장에서 B 코치를 대회나 훈련 때마다 마주치는 게 너무 힘들어 결국 국가대표의 꿈을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추후보도문

보도제목: [추후보도] 성추행 의혹 제기됐던 빙상 코치에 검찰 '각하' 처분 ...“충분한 근거 없어”

본문내용: 본 방송은 20XX년 △월 조정대상보도를 했습니다.

검찰은 20XX년 ▲월, ‘피해자로 지목된 선수와 가족들로부터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면서 해당 코치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스포츠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 3번째 이내에 추후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추후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이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③, ④의 본문 하단에도 추후보도문을 게재한다.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를 공급한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23 2021서울조정1172·1173·1174·1175 정정·반론·추후·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뉴스통신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알림 및 반론보도)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와 관련,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알림 및 반론보도를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A대학교 B 교수가 제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성추행 의혹 사건이 잘 해결되었다’고 이야기했고, 일부 제자에게는 수업 조교를 맡아줄 것을 요청하는 등 강단 복귀를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B 교수가 제자의 연구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도 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B 교수는 직위해제는 징계가 의결될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정조치에 불과할 뿐 아니라, 교원징계의결요구서에는 성추행 관련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성추행으로 직위해제된 것처럼 표현한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단에 복귀한다거나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여 성추행 사건이 잘 해결되었다고 언급한 바 없음에도 허위사실의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아울러 인건비 유용을 포함한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했으며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인건비 유용과 관련한 신청인의 사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나,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관계로 추후보도는 현 시점에서 어려워 보이고, 제자들과의 통화 내용은 직접적 진술이 아닌 전언을 옮긴 것이므로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청인은 그간의 수사 내용을 알림보도를 통해 게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향후 무혐의가 확정되면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 신청을 재차 하겠다고 했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알림보도는 수용 가능하나 반론보도 게재 여부는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재부에서는 양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 알림 및 반론보도 게재를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 모두 동의하여 결정은 확정됐다.



※ 이후 신청인은 성추행 및 사기 등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받아 피신청인 언론사를 상대로 다시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해당 사건은 추후보도 게재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대학원생 제자를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A대 B 교수가 돌연 강단에 ‘셀프 복귀’를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 A대 대학원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B 교수는 최근 제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건이 잘 해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사과해 (성추행 의혹) 사건이 잘 해결됐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일부에게는 수업 조교를 맡아줄 것을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강단 복귀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학내 조사를 담당했던 A대 인권센터가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하면서 B 교수는 지난해 직위해제됐다. [후략]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알림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알림 및 반론보도] ‘제자 성추행’ 의혹 A대 교수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에서 A대 B 교수가 제자의 연구 인건비 유용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대학원생 제자를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후 최근 제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사과해 사건이 잘 해결됐다고 강단 복귀를 예고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OO경찰서 수사 결과 ‘사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관하여 20XX년 △월 △일자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으나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20XX년 ▲월 현재 경찰의 보완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B 교수는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이 없고, 제자들에게 전화해 사건이 잘 해결되었다고 말한 적은 없으며, 강단 복귀를 언급하거나 일부 제자에게 수업 조교(TA)를 맡아줄 것을 요청한 바도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알림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알림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24시간 동안 초기화면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들 본문 하단에 알림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들을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뉴스서비스에 한함)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들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단,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들에 대한 추후보도 청구는 제외)을 묻지 아니한다.



사례 24 2021서울조정1226·1227·1228 정정·추후·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기초광역단체 의원)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후속보도)

구의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보도와 관련, 후속보도에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추후보도 내용을 반영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구의회 의원 A 씨가 농지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구체적 혐의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 인근과 □□ B지구 인근 토지를 매입할 때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했다는 것과 3기 신도시 지정 전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사들인 것이라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B지구 일대 농지와 관련해 어떠한 혐의로도 입건된 적이 없고, 농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토지는 ○○구 △△동 토지였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 B지구 토지는 3기 신도시 지정 5년 전부터 매입하여 농사를 지어온 것임에도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고 보도하여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 및 추후보도와 1,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토한 결과 □□ B지구 인근 토지 관련 혐의에는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불송치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보도를 게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중재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정정 및 추후보도 내용을 후속보도 형식으로 게재하겠다고 하였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경찰은 ◇◇ ○○신도시와 □□ B신도시 주변에 30억 원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구의회의원 A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A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어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20XX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 인근과 □□ B지구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의원은 또, 3기 신도시 지정 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사들인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후속보도문

보도제목: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 구의원 투기 혐의 벗어

본문내용: ◇◇ ○○ 등 3기 신도시 일대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됐던 현직 구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은 ◇◇ ○○구 A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하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 ○○테크노밸리 예정지 등에서 부지를 매입하면서 신도시 지정 전 미공개 정보로 토지를 사들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의원은 이에 대해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 B지구 인근 부지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의원을 지난 3월 소환해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의원은 "고교 졸업 이후 약 40년간 토마토, 쌈, 채소 등을 경작했으며, □□ B지구 토지는 20XX년 매입해 혐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섹션에 후속보도문의 제목을 24시간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후속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24시간 게재 이후에도 해당 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기사 DB에 보관하여 홈페이지에서 열람·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25 2021서울조정2931 추후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뉴스통신
처리결과	조정성립(추후보도)

북무지도관이 사회복지무원을 성추행하였다는 보도와 관련,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추후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병무청 소속 북무지도관이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무원의 무릎을 1분간 만지면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사회복지무원이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아픈 부위를 본인이 직접 확인시켜주어 지압을 해준 것뿐인데, 희망하던 북무기관 재지정이 이뤄지지 않자 불만을 품은 사회복지무원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투서를 했고, 이를 토대로 언론사가 신청인에게는 사전 확인도 하지 않은 편향된 보도를 하여 피해를 입었으나,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있었으므로 추후보도를 권유했고, 피신청인 언론사 역시 추후보도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신청인이 원하는 보도문을 일부 수정하여 추후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경기 ○○남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지방병무청 소속 북무지도관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북무지도관 A 씨는 20XX년 △월 △일 ○○지역의 한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무원 B 씨의 무릎을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B 씨가 무릎에 비골신경증을 호소하자 A 씨가 바지를 걷어 올리라면서 손바닥으로 무릎을 약 1분 정도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이 같은 피해사실을 담아 고소장을 지난 17일 수사기관에 접수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추후보도문

보도제목: [추후보도] 사회복지요원 추행 혐의 병무청 지도관, 무혐의로 밝혀져

본문내용: 본보는 20XX년 △월 △일 조정대상보도에서 ○○남부경찰서가 □□지방병무청 소속 복무지도관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남부경찰서 수사 결과, □□지방병무청 소속 복무지도관 A 씨는 위 내용에 대해 20XX년 ▲월 ▲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경기>섹션에 추후보도문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추후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24시간 동안 <경기>섹션 기사목록 3번째 내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의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제4장

손해배상 지급 사례

제4장 손해배상 지급 사례

사례 26 2021광주조정13·14/15·16 각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보도, 손해배상 100만 원)

지자체가 추진 중인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관련, 신청인들이 업체와 결탁해 특정 처리방식 도입을 고집하는 등 시의 사업 추진을 막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A시가 현재 사용 중인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연한 종료를 앞두고 쓰레기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A시의회 일부 의원들과 일부 기자들, B 업체, 그리고 주부 두 명이 특정 처리방식의 소각로를 고집하며 사업을 반대하고 있어 A시가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들은 A시에 거주 중인 주부들로,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A시가 건립하려는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한 사업추진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해 왔고, 특히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처리방식(스토커 방식)은 환경오염을 심화시킬 수 있어 친환경적 소각로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피신청인 언론사가 신청인들이 B 업체의 사주를 받고 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반대한 것처럼 보도하여 사회적 비난을 받게 하는 등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와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기사 중 ‘주부 두 명’이 신청인들을 지칭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였으나, 신청인들은 A시 소각로 추진에 관련된 시민단체는 신청인들이 소속된 단체뿐이므로 보도에 언급된 ‘주부 두 명’은 자신들이라는 점을 주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재부는 일반 독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신청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정정보도 게재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권유했고,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A시 쓰레기 자원회수(소각)시설 추진과 관련해 특정 처리방식 도입을 고집하며 A시의회 일부 의원과 일부 지역 주재기자와 인터넷 기자 3 ~ 4명, B 업체 관계자, 주부 두 명이 반대, 시 현안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듣도 보도 못한 시민단체를 들먹이며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A시가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환경부의 새로운 지침에 대한 홍보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정정보도문

보도제목: [정정보도] <[사실] A시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정책 홍보 시급> 관련

본문내용: 본 신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A시 쓰레기 자원회수(소각)시설 추진과 관련해 특정 처리방식 도입을 고집하며 A시의회 일부 의원과 일부 지역 주재기자와 인터넷 기자 3 ~ 4명, B 업체 관계자, 주부 두 명이 반대, 시 현안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본 기사에 언급 된 주부 두 명은 특정 처리방식 도입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친환경적 소각로 설치를 주장한 것이며, B 업체 관계자라도 무관함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신문 11면 오피니언란에 정정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같은 활자크기로, 본문은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오피니언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48시간 동안은 주요뉴스목록 상위 5번째 이내에 나타나게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 크기와 같게 하여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정정보도문이 나오게 한다. 48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도 정정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위의 이행과 함께 정정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상자기사로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50만 원씩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사례 27 2021경남조정10·11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일반단체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보도, 손해배상 30만 원)

주민자치회 위원 선임이 상인회 중심으로 이뤄지는 등 자치회 구성이 적절하지 않고, 이로 인해 회장 등 임원 선거도 불공정하게 치러졌다는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동 주민자치회 위원 중 상인회 소속 상인들이 21명을 차지하는 등 대부분이 상인회와 관련 있으며, 평균 연령이 70 ~ 80세에 이르러 온라인 교육 접근성도 떨어진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예비군 중대장까지 위원으로 편입시키는 등 ○○동 행복복지센터가 편법으로 주민자치회 구성에 개입했다는 의심이 있고, 기표소도 없이 공개투표를 진행하는 등 주민자치회장 경선도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원 구성과 임원 선출 등은 모두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며, 주민자치회 임원 9명 중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해 상인회와 관련된 사람이 인원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보도는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치회 위원 평균 연령은 60세 정도이며, 자치회 위원인 예비군 중대장은 8년간 ○○동에 거주하여 주민회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자치회에 자의로 참여한 것이지 행복복지센터가 개입한 바 없고, 회장 경선은 투표함을 설치하여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는 등 투명하게 치러졌다고 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 언론사가 낙선자들의 허위제보를 일방적으로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2,45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 언론사가 제보를 받아 보도한 것이더라도 사실 확인 절차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정보도 게재와 함께 소액이라도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해 협의해볼 것을 권유했고, 양 측이 이를 수용하여 정정보도 및 3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그런데 또 다시 지난 5일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동 통장이 올해 새로 선임된 사람이 3명이 있다”며 “이들 대부분이 상인회 관련된 자들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출신이다”라고 제보하면서 “○○동 주민자치회를 해산시키고 새로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의 제보자는 “주민자치회 구성을 할 때 현 임원진들이 임원선출 과정에서 이미 주민자치회장, 부회장, 감사, 간사, 분과위원장들을 몇 명이 내정해 놓았다”며 “□□동 상인회 소속 노점상들과 장사하는 사람들 21명을 주민자치회 임원이 됐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평균 나이가 70 ~ 80세가 넘는 사람들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줄도 모른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 해 준다는 식으로 해서 상인회 관련자들이 21명 임원이 됐고, 심지어는 예비군 중대장까지 집어넣었다”며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로지 표만 모으려고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자치회 회장 경선을 하는데 비밀 투표도 보장되지도 않고 기표소 없이 동직원이 서서 1, 2번 표기로 선출했다”며 “결국 상인회 관련자들이 주민자치회를 장악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제보자는 “처음부터 불공정하게 진행됐다. 주민자치회 명단을 등에 요구하자 목살 시켰다”며 “경선해봐야 상인회 임원들이 43%가 되니 경선이 되냐”고 반문하면서 “불공정 사례가 있다. 감사를 요구해 ○○동 주민자치회를 해산시키고 새로 구성해야한다며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정정보도문

보도제목: [정정보도] A시 ◇◇구 ○○동 주민자치회 관련

본문내용: 본지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첫째, 올해 ○○동 통장으로 3명이 새로 선임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이 상인회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도했으나 새로 선임된 통장은 4명으로, 이중 상인회에 소속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동 주민자치회 전체 위원 49명 중 임원은 총 9명이고, 전체 위원 중 상인회 소속은 총 15명이므로, ‘상인회 관련자들 21명이 주민자치회 임원이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셋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한 교육 이수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A시 관련 조례 및 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 이수증 제출 후 위원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넷째, 주민자치회 회장 경선 시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는 등 경선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확인 결과 문제가 없었으므로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최상단 주요기사목록에 통상의 기사목록 제목 크기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정정보도문을 기사 DB에 보관하여 지속적으로 열람·검색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해당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사례 28 2021서울조정1129·1194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정보도, 손해배상 1,500만 원)

언론사가 법원의 결정을 잘못 이해한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게재한 사안과 관련, 중재부가 직권으로 다시 정정보도를 게재할 것과 손해배상 지급을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인용하여 ‘40대 남성이 피해 여성을 7년간 성폭행하고 협박해오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 지역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보도가 잘못되었으므로 정정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신청인 언론사는 ‘자살한 40대 남성이 7년간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고, 청와대 청원 글 내용은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게재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피신청인 언론사가 가해자 유족이 주장한 취지를 재판부의 결정으로 잘못 이해해 재판부가 마치 신청인이 해당 남성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고 인정한 것처럼 보도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인터넷 카페에서 비난이 크게 이는 등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최초 정정보도가 잘못된 내용이었음을 인정하면서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했고,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양 당사자가 손해배상금의 구체적 액수는 중재부의 결정을 바란다고 진술함에 따라 중재부는 정정보도 게재 및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측 모두 동의하여 결정은 확정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본 매체는 해당 기사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XX. △. △. 게시된 “저를 7년이나 성폭행하고 살인미수, 협박, 폭행, 강간해온 가해자를 고발하며, 더하여 부실수사와 정보 유출하는 경찰수사관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그대로 인용하여, “청와대 청원에

등장하는 가해자가 ◇◇ ○○의 주거지역에서 20XX년 △월 △일 자살한 40대 남성”이라는 내용, “해당 가해자가 20XX년부터 7년간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협박”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 ○○의 주거지역에서 20XX년 △월 △일 자살한 40대 남성은 7년간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고, 본 매체가 인용한 청와대 청원 글의 내용은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해당 남성을 무고하기 위한 허위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본 매체가 보도했던 기사의 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후략]**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정정보도문

보도제목: [정정보도] <[정정보도] “[단독] 7년간 성폭행 등으로 망가진 삶 … 피의자는 극단적 선택”>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에서 “◇◇ ○○의 주거지역에서 20XX. △. △. 자살한 40대 남성은 7년간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고”, “본 매체가 인용한 청와대 청원 글은 (중략) 해당 남성을 무고하기 위한 허위사실로 밝혀졌습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또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성폭행 관련 소송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없고, 여성의 청와대 청원글이 남성을 무고하기 위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해당 보도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 아니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섹션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게재 시점부터 24시간 동안 사회섹션 기사목록(상단 5번째 이내)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한다.



사례 29 2021서울조정1364/1365 각 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방송, 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손해배상 400만 원)

양육비 청구 소송 관련 보도를 하면서 보도와 무관한 신청인들의 과거 영상자료를 동의 없이 자료화면으로 사용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손해배상을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현행 민법 규정상 아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배우자로 한정되어 있어 조손가정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며, 후견인으로 외손자를 맡아 양육하고 있는 70대 A 씨의 사연을 뉴스 프로그램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A 씨의 딸이 이혼 소송 중 사망하자 이를 알게 된 A 씨의 사위가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A 씨는 사위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외할아버지의 양육비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향후 배우자가 아닌 후견인도 양육비를 확보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신청이유

조손관계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언론사가 해당 보도를 하면서 전혀 관련이 없는 신청인들 관련 화면을 사용하여 초상 및 사생활이 침해되었으며, 자료화면으로 사용된 영상은 4 ~ 5년 전 태양광시설 설치 시 방송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촬영 협조를 구해와 허락한 것으로, 당시 방 안까지 촬영한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동의한 바도 없다고 했다. 해당 방송이 자료화면을 흐리게 가공하여 사용하였다고는 하나 가족들과 친인척은 영상 속 인물이 모두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고, 특히 딸이 이혼 소송 중에 사망했다는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청인들의 영상을 사용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신적으로 피해도 크다며 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들에게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미 수정 조치를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재부는 흐림 처리를 하였더라도 보도된 소송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들의 초상을 불명예스러운 보도에 사용한 점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 4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5년째 외손자를 맡아 기르고 있는 70대 A 씨.

이혼 소송을 하던 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엄마 잃은 외손자의 후견인을 맡았습니다. 그러자 월 양육비 70만 원씩을 보내오던 아이의 친아버지, 즉 A 씨의 사위는 양육비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A 씨는 사위를 상대로 매달 양육비 2백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손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후견인임에도, 외할아버지의 신분으로 양육비를 받아 낼 길이 막막했습니다. 매달 들어갈 미래의 양육비는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만 민법에 규정돼 있어, 다른 사람은 요구할 자격조차 안 됩니다. **[중략]**

그런데 대법원이 배우자가 아닌 양육자에게도 양육비 청구권이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양육책임에 대한 민법 조항을 폭넓게 적용하면, 미성년자를 책임지는 후견인도 친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사위가 A 씨에게 매달 15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후략]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들에게 4,000,000원(신청인별 2,000,000원씩)을 지급한다.



사례 30 2021서울조정1400·1401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뉴스통신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손해배상 700만 원)

함께 여행 중이던 여성을 고문 및 성폭행한 혐의로 현지에서 기소된 남성 관련 보도에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손해배상을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터키에서 한 한국 남성이 함께 여행을 간 한국 여성을 고문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지 검찰로부터 징역 46년을 구형받았다고 보도하면서 가해자 남성과 피해자 여성의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터키 현지 언론이 자신의 페이스북 사진을 무단 도용하여 기사와 함께 게재했고, 피신청인 언론사는 해당 보도를 전재하면서 아무런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여 이스탄불에서 여성을 고문하고 성폭행한 한국 남성이 자신인 것처럼 오인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사안의 특성상 정정보도보다는 손해배상을 통한 피해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신청인은 심리 중 정정보도청구는 취하하고 손해배상청구만을 유지하기로 했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보도 후 2시간 내로 사진을 삭제하는 등 신청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했다며, 손해배상금의 지급 여부는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 7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결정은 확정됐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금 7,000,000원 정을 지급한다.



사례 31 2021서울조정1533 손해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신문(유튜브채널)
처리결과	조정성립(손해배상 100만 원, 열람차단)

신청인이 특정 연예인을 모욕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신상정보를 노출하여, 언론사가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기사의 열람을 차단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 A 씨가 가수 B를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 팬 카페에 올려 B의 후원자를 자처하는 연예인 C로부터 고발당했고, 수사결과 A 씨의 혐의가 인정되어 1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또한 A 씨는 가수 B의 전 매니저 K의 누나로, B에게 금품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죽여 버리겠다는 살해협박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 신청이유

신청인 A 씨는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모욕 혐의에 대해서만 100만 원의 약식 기소가 이뤄졌으나, 아직 벌금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보도에 이름 두 글자와 운영하는 농장 이름이 공개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조정 심리 이전에 조정대상보도 전체를 열람차단했으며,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재부는 손해배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1,000,000원을 지급한다.

사례 32 2021경남조정24 손해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뉴스통신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손해배상 100만 원)

사고 후 응급조치를 받고 있는 망자의 사진을 게재한 보도와 관련, 공익 목적의 보도일지라도 초상 공개의 필요성이나 긴급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중재부가 직권으로 손해배상을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A 씨가 테트라포드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했다고 보도하면서, 구조 당시 해경이 A 씨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는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들은 추락사고 후 응급조치를 받고 있는 보도 사진 속 망자 A 씨의 자녀들로, 사진을 보도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을 뿐더러 아버지의 위급한 상황이 담긴 사진이 무단으로 게재되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동의 없는 초상 공개에 대해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경찰이 모자이크 처리하여 제공한 사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없고, 조정이 신청된 후 즉시 사진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며 손해배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보도의 공익성은 인정되나, 해당 보도에 반드시 망자의 사진을 게재해야 할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다고는 하나 주변 사람들은 사진의 인물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었고, 같은 사안을 보도한 대부분의 타 언론사들이 추가로 모자이크 처리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사진의 게재로 망자의 초상권이 침해된 사실과 이로 인해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인정된다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양 당사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확정됐다.



■ 조정대상보도

지난 △일 오후 10시 27분쯤 경남 ○○시 □□도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A 씨가 테트라포드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당시 A 씨가 추락하는 것을 일행이 목격, 119와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구조거점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17분 만에 현장에 도착, 테트라포드 사이에 갇힌 A 씨를 발견했다.

이후 10분 만에 A 씨를 구조했지만 의식·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즉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며 육상에서 대기 중이던 119에 인계했다. [후략]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들에게 도합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사례 33 2021경기조정230·231·232/233·234·235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방송, 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보도, 손해배상 50만 원)

학교 밖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하면서,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취하고 취지를 왜곡되게 편집해 방송한 사안에 대해 정정보도 게재와 함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꿈을 키워주기 위해 ○○학교가 설립되었으나, 학습 공간과 강사 인건비 부족, 부실한 프로그램 진행 등 운영상 문제로 잡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를 하면서 ○○학교 관계자들과의 통화 내용을 방송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보도에 인터뷰 당사자 B 씨로 언급된 ○○학교 운영자로, 인터뷰가 아닌 간단한 사전조사를 전제로 기자의 문의에 답변하였는데, 통화내용이 녹음되는 사실을 몰랐으며, 뉴스에 음성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피신청인 언론사는 동의 없이 녹취한 통화내용을 정식 인터뷰인 것처럼 편집하면서, 수년 전 학습공간이 부족했던 일을 현재진행형인 것처럼 묘사하고, 강사로 책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왜곡하는 등 ○○학교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신청인 답변을 의도와 다르게 방송하여, ○○학교 운영에 불만에 품은 내부고발자로 오해받게 됐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신청인은 방송과 인터넷상에서 각각 정정보도가 되기를 원하였으나, 피신청인 언론사는 인터넷 기사 형식의 정정보도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재부는 정정보도를 인터넷에만 게재하되 음성권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권유했고, 이에 양 측이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알림보도문

보도제목: [알립니다] ◇◇ ○○학교 보도 관련

본문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 관련, 당시 보도 내용 중 해당 인터뷰 당사자(□□ A 씨, △△ B 씨)의 입장 및 취지가 다름을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도교육청 관계자 및 ○○학교 운영자 등은 “7년 동안 이어온 ○○학교가 배움의 주체인 학생 중심으로 자유롭게 상상하고 실천함은 물론 미래교육을 견인하는 정책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림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12시간 동안은 뉴스면 주요뉴스목록 상위 5번째 이내에 나타내게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하여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알림보도문이 나오게 한다. 12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도 알림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의의 사항을 전송한다.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500,000원을 지급한다.

사례 34 2021서울조정1754·1755·1756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언론인)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손해배상 30만 원)

여권 정치인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가 신청인이라고 잘못 보도한 사안에 대해 언론사가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사전 게재한 후, 심리 과정에서는 소액의 손해배상금을 상징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유튜브 채널 ○○○○TV가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 여당 정치인 B 씨 측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하면서, ○○○○TV의 운영자는 여권 성향 매체에서 활동한 A 씨라고 언급했다.

■ 신청이유

A 씨로 언급된 신청인은 ○○○○TV를 운영하기는커녕 해당 매체에 출연한 적도 없으면서, 첫 오보를 게재한 C 인터넷신문의 기사를 다른 매체들이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고 받아쓰면서 오보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SNS 등을 통해 수차례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 언론사는 여전히 보도를 수정하지 않고 있어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정정 및 반론보도와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오보를 인정하고 조정 신청을 받은 후 기사 수정 및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중재부는 정정 및 반론보도가 반영된 상황이므로, 손해배상은 상징적 의미를 표하는 수준에서 합의할 것을 제안했고, 양 당사자가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의 신청인 언급 부분은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신청인 계좌로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6일 이내에 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사례 35 2021서울조정2521·2522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손해배상 300만 원)

특정 SNS 계정의 여학생 교복 성적 대상화 논란을 보도하면서, 미성년자인 신청인이 SNS에 올린 사진을 무단 게재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의 사진이 담긴 SNS 계정을 두고 성적 대상화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 사진 여러 장을 기사 본문에 함께 게재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1만 명 이상이 팔로우 하고 있는 SNS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언론사가 해당 보도를 하면서 자신의 SNS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이를 알아 본 사람들로부터 신청인을 비난하는 댓글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됐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미성년자인 신청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안인데 피신청인 언론사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신청인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그대로 합의하기를 권고했다. 피신청인 언론사가 이에 동의하여 신청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 A 씨는 “본인들 허락 받고 올린다지만 너무 충격 받았다”며 “미성년자들의 노출 심한 교복 사진들만 모아서 업로드 하더라. 학생들 교복을 이렇게 성적 대상화하는 게 화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 씨가 언급한 SNS 계정에는 10대 여학생들의 교복 차림 사진이 다수 게재됐다. 계정의 팔로워 수는 2만 5000여명이 넘는다. **[중략]** 해당 계정 속 여학생들은 교복 차림으로 다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가슴을

내밀거나 다리를 부각하는 등 몸매를 드러내며 허리에 딱 붙은 상의, 짧게 줄인 치마 등을 입었다. 사진의 배경은 주로 학교 교실이나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이었다. [후략]

※ 신청인 사진은 열람이 차단되었음

■ 조정성립사항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3,000,000만 원을 지급한다.



사례 36 2021대전조정48 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취하(손해배상 50만 원)

지역 공연 정보를 소개하면서 신청인이 촬영한 공연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새로 건립된 지역 공연장이 공식 개관을 앞두고 사전공연을 선보였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공연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공연 후기 및 공연 사진을 주로 올리는 블로거인데, 피신청인 언론사가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심리가 열리기 전 신청인이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대체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이에 신청인은 조정 신청을 취하했다.

■ 조정대상보도

○○시문화재단(대표이사 A)은 X일 내년 △월에 공식 개관을 앞두고 ○○예술의 전당 첫 번째 사전공연으로 'B와 함께하는 특별 ◇◇◇콘서트'를 선보였다. **[후략]**

※ 신청인이 촬영한 사진은 열람이 차단되었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제 5 장

열람차단 / 기사수정 사례

제5장 열람차단 / 기사수정 사례

사례 37 2021전북조정76·77/78·79 각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일반단체
피신청인 유형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기사수정)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가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사회적 분위기에만 편승해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보도와 관련, 당사자 간 합의 불능으로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졌으나, 이후 언론사가 보도 제목을 수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신고를 받은 노동부가 B재단 대표이사에게 시정 지시 및 개선지도 처분을 내렸는데, B재단 구성원들은 이러한 처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A연대는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B재단 대표이사 사퇴를 종용하는 자극적인 내용의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여 B재단 구성원들의 공분을 샀고, 이러한 무분별한 비난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부 조사가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고, B재단의 직장 내 성희롱 파동의 본질은 인사 불만이라고 덧붙였다.

■ 신청이유

신청인 A연대는 지방노동청 조사결과와 B재단 대표이사의 입장문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며, 성명서는 시장과 시의회가 B재단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문제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피신청인 언론사는 오히려 가해자의 편에 서서 ‘A연대가 진실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성희롱을 강조하면서 인기에 영합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통해 A연대를 무책임한 집단으로 매도하였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51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3차에 걸쳐 심리가 진행되었으나, 정정보도를 주장하는 신청인과 반론보도를 주장하는 피신청인 언론사의 주장이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중재부는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였으나, 심리종결 후 피신청인 언론사가 보도 제목을 수정했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특히 대다수의 재단 직원들은 내홍의 발단이 특정인의 인사 불만에서 비롯했다는 사실을 주목해달라고 요청한다. 또 지역의 특정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이 ‘성희롱’이나 ‘갑질’같은 자극적인 단어만을 앞세운 채 사실을 확인하지 않거나 구체성을 배제하는 것은 심각한 병폐라는 여론이다. **[중략]**

D 이사는 “A연대가 성희롱의 실체를 파악하지 않은 채 ‘성희롱’이라는 단어를 전면내세워 재단 이사회의 징계 의결 결과를 비난하고 대표 사퇴 등을 운운했다면 그것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범죄행위다. 그것은 A연대가 ‘성희롱’이라는 단어를 내세운 나머지, ‘성정체성이 뚜렷한 남성인 재단 대표가 같은 남자 직원에게 던진 농담이나 행위를 고용노동부는 성희롱으로 인용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비판했다.

A연대는 재단 대표이사의 사퇴를 요구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정직’을 결정하지 않은 재단 이사회를 비난했다. 또 C 시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이례적으로 같은 사안에 대한 성명을 3차에 걸쳐 발표하면서도 해당 사안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후략]**

조정불성립결정 후 기사 수정사항

기사 수정사항

〈보도 제목 수정〉

(수정 전) A연대는 형사처벌 대상

(수정 후) A연대 성명 ‘위험 수위’

사례 38 2021광주조정36 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일부 열람차단)

지자체 예산 집행과 관련한 의혹 보도를 하면서 의혹 내용과 무관한 신청인의 음성을 동의 없이 녹취, 공개한 사안과 관련, 언론사의 인터넷기사 및 유튜브 영상에서 신청인 음성 부분을 열람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군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형식으로 운영하는 A학교가 코로나19로 운영되지 않았음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년간 3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등 세금을 낭비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A학교 사무국장인 신청인과의 통화 내용을 인터넷기사에 인용하였을 뿐 아니라, 함께 게재한 유튜브 영상에도 신청인의 음성을 2분가량 포함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산 낭비 의혹이 제기된 학교 리모델링 비용 문제는 위탁사업자인 A학교와는 상관없음을 해명하고, 추가 취재에 도움을 주고자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주무부서를 안내해주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 언론사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실제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취재 노력은 다하지 않고, 전화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취한 후 예산 집행 의혹과 무관한 학교 사업계획 관련 내용만을 기사와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하여 신청인의 음성권 등을 침해했다며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보도의 진실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화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며, 신청인의 반론과 해명도 충분히 보장했다고 항변했다. 중재부는 녹음된 음성을 보도에 활용하려면 신청인에게 동의를 얻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손해배상 대신 음성이 보도된 부분을 열람차단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이후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기사 전체를 열람차단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조정성립사항

열람차단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중 신청인과의 전화인터뷰 내용 부분이 더 이상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네이버, 다음, 유튜브 등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중 신청인과의 전화인터뷰 내용 부분이 더 이상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사례 39 2021광주조정50·51/52·53 각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기사수정)

경찰이 수사권 없는 외부 기관에 장애인 성폭행 사건 조사를 떠넘기고 성폭행 가해자를 방치하는 등 대응을 안일하게 했다는 보도에 대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보도 제목 수정 및 추가 반론 게재를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지역 복지관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과 관련, 일반 성폭행 사건은 경찰이 직접 조사하면서 장애인 사건은 아무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떠넘기고, 성폭행 가해자를 방치하는 등 피해자 신변보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경찰의 초동 대응을 비판하는 장애인단체의 입장을 보도했다.

■ 신청이유

장애인 성범죄사건을 수사하는 ○○시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인 신청인들은,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후 신뢰관계인 동석 하에 피해자를 조사했고, 국과수 DNA 검사 의뢰, 피해자 모친 면담, CCTV 영상 확보와 함께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혐의입증을 위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며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기사 제목도 해당 단체의 주장만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작성되는 등 실제 경찰이 장애인 성폭행 가해자를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표현하여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신을 조장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해당 보도는 장애인단체의 기자회견문을 토대로 했다면서, 허위 내용이 아닌 이상 신청인들의 기사수정 요청을 받아줄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중재부가 신청인 측 반론을 보도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자, 피신청인 언론사는 기사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중재부는 양 당사자 협의를 주문했으나, 양 당사자는 중재부가 직권조정결정을 내려주면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진술했다. 중재부는 보도의 주제목과 부제목을 수정하고, 신청인들의 반론을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은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장애인단체들이 △일 경찰이 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안일하게 초동 대응해 2차 가해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중략]**

장애인단체의 말을 종합하면 ○○시장장애인복지관 직원 A 씨는 지난달 ▲일 복지관을 이용하던 지적장애인 B 씨에게 “바다를 보러 가자”며 불러내 성폭행했다. B 씨에게 피해 사실을 들은 B 씨 어머니는 다음날 112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장애인 학대 조사, 예방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중략]** C ○○장애인총연합회 이사장은 “A 씨는 신고 당일 피해자 가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나는 무죄이고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가겠다’고 밝혀 피해자를 불안에 떨게 했다. 일반 성폭행 사건은 경찰이 직접 조사하지만 장애인 사건은 아무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떠넘기는 이유를 묻고 싶다”며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략]**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기사 수정사항

- 조정대상기사 중 주제목과 부제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주제목 수정〉

(수정 전) “경찰, ○○ 장애인 성폭행 가해자 방치”

(수정 후) 장애인단체, 장애인 성폭행사건 엄정수사 촉구

〈부제목 수정〉

(수정 전) 장애인단체, 경찰 부실수사 주장, 가해한 복지관 직원 뒤 늦게 해임돼, 경찰 “장애인복지법 절차대로 진행”

(수정 후) 가해 복지관 직원, 보름 뒤에야 해임, 경찰, “단체에 떠넘긴 적 없고 적극대처”

- 조정대상기사 끝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모든 사건에 대해 피해신고와 함께 즉시 수사진행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이 면담 과정에서 가해자 징계 절차 등을 문의해 해당 장애인 복지관장에게 항의할 수 있도록 안내한 사실만 있으며, 수사 중인 사건을 외부 지역단체에 떠넘길 수도 없고 가해자를 방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사례 40 2021서울조정1878·1879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취하(열람차단)

A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위원장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들에 보조금을 대거 지급했고, 현직 국회의원의 시누이가 근무하는 단체는 지출명세서 허위 공시 문제가 있었음에도 보조금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언론사가 기사의 열람을 차단하여 신청인이 심리 중 조정 신청을 취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A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위원장과 관련 있는 단체들에 보조금을 대거 지원하여 예산을 나눠먹기 한 의혹이 있으며, 과거 회계부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국회의원 B의 시누이가 운영하는 대북 지원 사업단체(사단법인 C)는 지난 5년간 기부금품 및 지출명세서 허위 공시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익활동지원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사단법인 C 산하 사업본부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바 있으나, 이미 6년 전 퇴직하여 사단법인 C의 최근 보조금 사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관에 의하더라도 본인이 역임한 사무국장은 운영위원이 아니고 채용된 직원에 불과함에도, 피신청인 언론사는 자신이 사단법인 C를 운영하며 올케인 B의 영향력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조정 심리에서 피신청인 언론사는 A시의회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한 잘못을 인정하고, 조정대상보도는 이미 열람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열람이 차단됨에 따라, 신청인이 조정 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이 사건 조정은 취하로 종결됐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사례 41 2021경기조정265 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뉴스통신
처리결과	조정성립(일부 열람차단)

신청인이 공용도로에 교통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진을 함께 게재하여 사진 일부를 열람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공용도로를 침범하여 교통 방해 시설물을 설치한 주민 때문에 마을 주민들 간 불화와 반목이 커져가고 있고, 무단 시설물을 두고 상반되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분쟁이 심화되자 시가 대처에 나섰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개인 주택과 영업장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다발성 민원 제기, 교통 방해 시설물 설치 등의 내용은 피신청인 언론사가 특정 주민의 제보에 의존해 보도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인 주택과 영업장 사진을 보도와 함께 게재하여 본인이 특정되는 등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마을 주민 간 분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기사를 열람차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중재부는 개인의 주거지 사진을 게재한 것은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어서 사진만 열람차단할 것을 권고하였고,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최근 'A시 ○○면 □□리'에 주민들 간의 불화로 인한 각종 민원이 빈발하여 슬렁이고 있다. 주거 문화의 변화에 따른 마을의 현대화로 각종 개발 행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다수의 주민들과, 각종 현장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공사 지장으로 조용하고 인심 좋던 시골 마을에 주민들 간의 반목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한 주민의 말에 의하면 “인접 국유지를 점용 받아 사용하는 어떤 주민은 점용지 외에 공용 도로를 침범해 교통 방해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이로 인해 비좁은 도로에 통행 시 실수로 무단 시설물을 건드리자 A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를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로 인해 주민들의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는 무단시설물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위해 A시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한다. **[후략]**

※ 신청인의 주택 및 영업장 사진은 열람이 차단되었음

조정성립사항

일부 열람차단

-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2개 보도 사진을 삭제하여 수정한다.
- 위 조치 이후 즉시,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도 이 사건 수정된 조정대상보도를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전송한다.



사례 42 2021서울조정1937·1938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회사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취하(일부 열람차단)

신청인 회사 소속 직원이 지하철 환기구 공사 중 사망했다는 보도와 관련, 본문 내용 중 일부를 열람차단하여 조정 신청을 취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지하철 X호선 A역 ~ B역 구간 환기구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추락 사고로 사망했고, 사망자는 C 회사(신청인 회사) 소속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회사는 X호선 구간 공사는 다수 업체가 공동으로 작업 중인 구간으로, 보도된 망자는 신청인 회사 소속이 아님에도 피신청인 언론사가 사실 확인 없이 C 회사가 사망 사고를 냈다고 보도해 신청인 회사의 업계 내 평판이 하락하고 차후 수주에도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5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이 사건 심리가 열리기 전 피신청인 언론사가 신청인 회사가 언급된 부분을 조정대상보도에서 열람차단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조정 신청을 취하였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 언급 부분은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사례 43 2021서울조정2184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취하(일부 열람차단)

신청인의 아버지가 성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를 하면서 해당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을 언급한 보도와 관련, 심리 전 신청인 관련 부분을 열람차단하여 신청을 취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제작자 겸 가수인 B 씨가 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다고 보도하면서 가수 B 씨는 트로트 가수 A의 아버지라고 언급했다.

■ 신청이유

가수 B 씨의 아들인 신청인은 본인 또한 트로트 가수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피신청인 언론사가 부친의 성범죄 관련 보도를 하면서 해당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신청인이 가수 B 씨와 부자관계임을 언급하여 사회적 명예가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이 사건 심리가 열리기 전 피신청인 언론사가 신청인이 언급된 부분을 조정대상보도에서 열람차단하여 신청인이 조정 신청을 취하였다.

※ 이 사건 외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한 매체는 17개이며, 모든 매체가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 관련 부분을 열람차단하거나 조정대상보도 전체를 열람차단하여 각 취하로 종결됐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의 신청인 언급 부분은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사례 44 2021서울조정2272 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취하(기사수정)

술자리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내부 CCTV 영상과 외관을 동의 없이 노출한 사안과 관련, 자료 영상 수정 후 조정 신청을 취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한 남성이 술자리에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였음에도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현직 경찰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보도하면서, 사건이 일어난 주점의 내부 인테리어가 드러나는 CCTV 영상과 가게 외관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술자리 폭행사건 보도의 배경이 된 주점의 업주인데, 가게의 외관 및 내부를 촬영하도록 동의해준 적이 없으며, 내부 CCTV 영상도 해당 보도에 쓰일 것이라고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동의 없이 공개된 영상을 본 불특정 다수로부터 연락이 끊이지 않아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영업장이 불미스러운 보도의 배경으로 사용되어 이미지가 훼손되고 매출이 급감하는 등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이 사건 심리가 열리기 전 보도 영상에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노출된 부분을 흐리게 처리하여 특정되지 않도록 수정했고, 이에 신청인은 조정 신청을 취하했다.

※ 이 사건 외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한 매체는 8개이며, 모든 매체가 조정대상보도 영상 또는 사진의 해당 부분을 흐리게 처리를 하거나 다른 영상 및 사진으로 교체하여 각 취하로 종결됐다.

조정대상보도

○○의 한 주점에서 한 남성이 동석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술자리에 함께 했던 일행 중에는 현직 경찰관도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습니다. **[중략]**

그런데 이 남성은 갑자기 여성을 향해 술잔을 집어던지더니 주먹을 휘두릅니다.

같이 있던 일행이 뜰어 말려보지만 이 남성은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여성에게 이 남성은 또다시 주먹을 휘둘렀고 여성은 쓰러졌습니다.

잠시 뒤 이 남성은 또 다시 들어와 주저앉아 있는 여성에게 발길질을 하고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중략]**

그런데 같이 있던 남성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소지품을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시 술자리에는 현직 경찰 간부도 있었지만 이 경찰은 피해 여성을 돌보지도, 신고를 하지도 않은 채 자리를 피했습니다. **[후략]**



사례 45 2021서울조정2445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취하(열람차단)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 프로그램에 선정된 사업자를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하면서 성명 및 초상 등을 공개한 보도와 관련, 언론사가 열람차단하여 조정 신청을 취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A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인 B 씨가 정부 창업 지원프로그램인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되었다면서, B 씨가 대학에 입학한 계기, 프로그램 참여 과정, 구체적인 향후 사업 계획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보도 게재에도 동의한 적이 없는데 마치 인터뷰를 한 것처럼 보도가 되었다고 했다. 보도에는 본인의 성명과 초상이 공개되어 인격권이 침해됐을 뿐 아니라, 상세한 사업 내용 등 회사 정보도 노출되어 피신청인 언론사에 삭제 요청을 했으나 언론사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신청인은 신속한 기사의 열람차단을 희망했고, 피신청인 언론사는 이 사건 심리가 열리기 전 조정대상보도를 열람차단하여 신청인이 조정 신청을 취하했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사례 46 2021서울조정2518·2519·2520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일반단체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보도, 열람차단)

신청인 협회가 일감을 몰아주고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정부부처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밝혀진 바 있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원 보도는 열람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 생산품 관련 업무수행기관인 A협회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대가성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협회는 협회에 소속된 회원이 2곳밖에 없었기 때문에 2개 업체와 계약을 진행한 것이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은 없다고 했다. 또한 후원금 관련 사안은 수년 전 보건복지부 감사와 검찰 조사를 통해 무혐의로 밝혀졌는데도 피신청인 언론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함께 2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신청인 협회의 후원금 관련 의혹은 이미 과거 보건복지부 감사와 검찰조사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으므로, 조정대상보도의 열람을 차단하고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방안을 권유했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정정보도문

보도제목: [정정보도] <○○○○○생산물 업무수행기관, 대가성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본문내용: 본보는 조정대상보도에서 A협회가 특정시설에 일감을 몰아주고 대가성 후원금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불법후원금 수령 의혹에 대해 이미 지난 20XX년과 20YY년에 보건복지부 감사 및 검찰 조사가 진행되어 A협회의 후원금 수령에 불법적인 사항이 없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정치면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보도문 제목과 본문의 크기 및 활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방식과 동일하게 하며,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2주 후 해당 보도문을 삭제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열람차단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열람 및 검색을 차단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제 6 장
기타 사례

제6장 기타 사례

사례 47 2021대구조정68·69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유감 표명, 반론권 보장)

신청인이 시의원 구속을 모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언론사가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관련 보도를 할 경우 반론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지역 주요 인사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한 지역 언론인이 'A당에서 제명된 D 씨(신청인)가 시의원 B와 모의하여 시의원 C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구속시키려고 했다'는 글을 올려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B 의원과는 인사를 나누는 사이에 불과해 C 의원을 구속시키려 모의한 바가 없음에도, 피신청인 언론사는 본인에 대한 취재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을 염두에 두고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고, 지역에 제명 당원이 신청인 1명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중재부는 보도 소재가 된 SNS 내용과 제명 당원이라는 표현, 보도 이후 주위 사람들이 신청인에게 연락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보도에 특정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중재부는 피신청인 언론사가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관련 보도를 할 때에는 신청인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부동산 이해충돌방지 의혹으로 권익위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C(○○시의회, ◇◇·△△·□□)에 대해 전 A당원들이 모여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구속시키자는 모의를 했다는 진술이 ○○의 주요인사 200여 명이 모인 한 단독방에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게시글을 올린 이는 지역 언론인으로 진보적 성향의 정론직필을 강조하며 그동안 도내 지역 언론 활동을 한 것으로 볼 때 발언의 신뢰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거론된 해당 의원은 모 지방언론사를 비롯 A당에서 제명된 D 모 씨와 모의를 했다는 발언까지 나와 진위 여부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후략]

■ 조정성립사항

피신청인 유감 표명 및 향후 반론권 보장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로 인해 신청인이 특정 시의원과 모의한 것으로 오해받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향후 신청인에 관한 취재와 보도를 할 때에는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한다.

사례 48 2021서울조정2049·2050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사과문 게재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피해자가 사실은 가해자라고 보도한 사안과 관련, 기사를 열람차단한 후 사과 및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장애인단체 직원인 A 씨가 동료 B 씨로부터 폭언을 듣고 업무배제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센터에 피해를 접수했으나, 사실은 A 씨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이며, 그동안 피해자인 척 사건의 본질을 호도해왔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A 씨는 ◇◇도 인권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한 결정문을 근거로 자신이 가해자라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했다. 결정문은 장애인단체 대표와 직원의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 과도한 업무량 부여, 연차휴가 사용 불허 등의 사실이 인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적시했다. 신청인은 허위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고, 심적 고통도 겪고 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직장 내 괴롭힘 입증자료를 확인한 후 오보를 인정하고, 조정대상보도문 열람차단, 사과를 포함한 정정보도문 게재, 손해배상 지급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정정보도문(사과보도문 포함)

보도제목: [정정보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알고 보니 가해자? “피해자인 척”> 관련
본문내용: 본보는 조정대상보도에서 “◇◇ ○○군의 한 장애인단체 소속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연일 언론에 피해를 호소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이 모든 게 거짓과 기만이라는 주장”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A 씨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에 해당 언론사는 신청인에게 허위보도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면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의 방식으로 게재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열람차단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열람 및 검색을 차단한다.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5,000,000원을 지급한다.

사례 49 2021서울조정2286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국회의원)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사진 캡션 수정 등)

국회의원이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 특정 시행사를 비호하고 있다는 풍문을 보도한 사안과 관련,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는 사진 캡션과 기사제목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 ○○동 민간도시개발을 두고 시행사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애꿎은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고, 신청인이 지역개발사업에 뛰어난 대기업 관계자에게 특정 시행사와의 협력을 강요하는 등 특정 시행사를 비호하고 있다는 풍문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신청인의 사진이 함께 게재되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지역의 타 매체 보도를 통해 시행사를 가장한 투기 세력의 횡포로 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잠정 중단되는 등 선의의 민간도시개발사업자들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후, 대형건설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국정감사 질의 준비를 하면서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였다고 했다. 그런데 피신청인 언론사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불특정 주민의 말을 인용, 신청인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악의적으로 매도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신청인은 보도에 게재된 신청인 사진을 열람차단해 줄 것을 희망했으나,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에 대한 의혹 보도가 핵심이므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중재부는 타협안으로 신청인 사진 하단의 캡션과 주제목 및 부제목을 부정적인 인상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하되, 정정보도 대신 반론보도를 게재할 것을 권유했고, 양 측이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광역시 □구 ○○동 토지를 둘러싸고 수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한 시행사는 수십 년간 미뤄왔던 개발 사업 열기가 피어오르자 ‘약정’ 방식으로 지역 토지에 깃발을 꽂아 논란에 휩싸였다. 땅값을 더 쳐주겠다며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시행사도 등장했다. 급기야 주민들 사이에선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시행사의 뒤를 봐준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중략]** 이런 상황에서 B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둘러싼 풍문도 돌았다. 복수 주민들은 “B가 A C당 의원(◇◇ □구) 비호를 받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A 의원이 D건설 관계자를 불러 ‘B와 손을 잡으라’고 강요했다는 소문도 퍼졌다”면서 “A 의원과 B 대표가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했다. D건설은 B의 경쟁 시행사인 △△△△을 출자한 회사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단독] ‘○○○○’의 향기가 ... ◇◇ ○○동 개발사업 둘러싼 잡음> 관련

본문내용: 본 지는 조정대상보도에서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 측은 “대형건설사 관계자를 불러 ‘B와 손을 잡으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고, ◇◇ ○○동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장 교란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었을 뿐 특정 시행사를 밀어주는 등 비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특종/단독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 3번째 이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이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재한다.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를 공급한 네이버, 다음 등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기사 수정사항

〈주제목 수정〉

(수정 전) '○○○○'의 향기가 ... ◇◇ ○○동 개발사업 둘러싼 잡음

(수정 후) ◇◇ ○○동 개발사업 둘러싼 잡음

〈부제목 일부 수정〉

(수정 전) '비호설' A 측 “대형 건설사 시장 교란 행위 막으려는 것”

(수정 후) 대형 건설사 뒤늦게 뛰어들어 논란 가열



사례 50 2021서울조정2395 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공공단체
피신청인 유형	방송
처리결과	각하

개인이 아닌 단체·기관이 조정을 신청한 경우, 보도가 있음을 안 날의 기준은 업무 대리권이 있는 담당자의 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투기 의혹 보도에 대한 공공기관의 조정 신청을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A공사의 ◇◇지역본부 ○○○동 사업소장이었던 전직 직원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 ○○○동 일대에서 투기를 한 의혹이 있고, △△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지역에도 빌라 소유주 중 A공사 직원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 92명에 이르는 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의 산업단지 후보지에서도 A공사 직원과 이름이 같은 9명이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있어 이들이 A공사의 직원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신청이유

신청인 A공사는 ○○○동 ◎◎마을 일대에서 무허가건물을 이용하여 투기를 했다는 전 직원은 ◎◎마을 사업시행자로 A공사가 지정되기 전에 퇴직한 사람으로 공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또한 이 사건 방송 전, 직원과 빌라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 대조를 통해 ◎◎마을 빌라 소유주들은 동명이인들일뿐 공사 직원이 아니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고, ☆☆ 산업단지 시행사는 신청인 공사가 아님에도 △△구 및 ☆☆에서 공사 직원과 동명이인들이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하여 공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이 사건 조정 신청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접수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했으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 전날 신청인 홍보 담당 직원에게 방송 일정을 고지했고, 보도 직후 신청인 홍보 담당 직원이 제작진에게 연락해왔음을 그 근거로 들었다. 한편 신청인 공사는 보도 당일에 홍보 담당 직원이 보도를 인지한 것은 인정하나, 경영진이 보도를 인지한 이후에 조정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중재부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은 조정 신청 업무의 대리권이 있는 대외 홍보 담당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함이 상당하여, 이 사건 조정 신청은 보도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신청한 것이 명백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조정대상보도

재개발 앞둔 마을.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산업단지 후보지 등 개발호재가 예상되는 곳곳에서 A공사 임직원들의 투기의혹이 제기 됐습니다. **[중략]**

(나레이션) A공사 전 직원의 투기의혹이 불거진 토지는 무허가 건물로 화장실, 부엌과 같은 주거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주거용이라고 주장하는 해당토지의 옆 건물 역시 전 직원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주민대표협의회 관계자) 이게 A공사 전 직원 딸 거예요. 20XX년부터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A공사가. 그리고 20YY년에 본부가 들어왔고 20ZZ년에 정식 시행사가 됐으니까. A공사가 시행사가 돼서 개발을 할 걸 알고 있었던 거죠. (A공사 전 직원) 딸들은 20ZZ년 정도에 샀더라고요.

(나레이션) 전 직원과 그의 자녀들이 ◎◎마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20ZZ년을 전 후로 땅과 건물을 매입했다는 건데요. 이 가운데 전 직원은 20ZZ년 A공사 ◇◇지역본부 ○○○동 사업소장을 지냈던 걸로 알려져서 의혹이 더 커졌습니다. **[중략]**

(나레이션) 좀처럼 오르지 않는 빌라의 매입가격이 사업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꺾은 꼴이 됐 거죠. 해당 지역의 빌라 소유주 448명 가운데, A공사 직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92명인데요. 이중 근무지와 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인접한 동명이인은 총 34명에 달합니다. **[중략]**

◇◇뿐만 아니라 ☆☆에서도 A공사 직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투기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곳은 ☆☆시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후보지인데요. ☆☆시는 20VV년 A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왔지만 사업성 문제로 현재 협약이 해지된 상황. **[후략]**